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 집필진

김명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치)  
서유진 변호사(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이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이래)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전규해 변호사(사단법인 온울)  
최귀일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감수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인권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회원분들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포럼 및 세미나, 각 분야별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으로 인해 분단된 지 어느새 70년이 넘어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였기에 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졌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지금도 법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의 규범력을 낮게 보는 법의식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법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시안으로 방치하였을 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시안입니다.

이에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 관련 활동 영역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및 국적 인정과 결혼, 이혼 등 가사 관련 문제, 브로커 계약 등 민사 관련 문제, 폭력 등 형사 관련 문제, 복지급여수급권,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개월 동안 매뉴얼의 제작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옹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 정 옥

---

**I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1**

---

1. 북한이탈주민의 의의 및 현황 ..... 3  
    가. 북한이탈주민의 의의 ..... 3  
    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현황 ..... 4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정착 과정 ..... 6  
    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 ..... 6  
    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 및 정착 과정 ..... 7

3. 상담 및 법률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 및 법인식 이해 ..... 12  
    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 이해 ..... 12  
    나.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 14

4. 법률지원의 필요성 및 유의사항 ..... 15  
    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취약성 ..... 15  
    나. 상담 및 법률지원 시 유의사항 ..... 16

5. 주요 북한 용어 ..... 18

---

**II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및 국적      21**

---

1. 주요 법률 이슈 ..... 23

2.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 24  
    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절차 ..... 24  
    나. 보호결정 효과 ..... 30  
    다. 보호의 변경 및 취소 ..... 32  
    라. 비보호 결정에 대한 불복 ..... 34

3.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적 및 입국 .....	35
가.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	35
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적 .....	37
다. 제3국 출생 자녀 국적 확인 및 가족관계 등록 절차 .....	37
라.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적 선택 .....	39
마. 북한이탈주민 자녀 입국 방법, 체류 .....	39
4. 중국인 배우자의 입국 방법 및 체류 국적 취득 .....	40
가.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방법 .....	40
나. 중국인 배우자의 체류 및 귀화 .....	40

---

<b>Ⅲ</b>	<b>가사 분쟁</b>	<b>43</b>
----------	--------------	-----------

---

1. 가사사건과 북한이탈주민 .....	45
2.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사사건 사례의 유형 .....	46
가. 가족관계 등록·주민등록표·주민등록번호 .....	46
나. 개명신청 .....	46
다. 성과 본 변경 .....	47
라. 혼인 일반 .....	48
마.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	49
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52
사. 위장결혼 .....	52
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인지의 청구 .....	53
자. 양육비·면접교섭·친권 .....	55
차.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권제한 등 .....	58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사 판결 현황 ..... 61
2. 민사사건 법률지원 시 유의사항 ..... 63
  - 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법의식 이해 ..... 63
  - 나. 소송비용 및 경제적 상황 고려 ..... 64
3.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법률문제 - 탈북 용역 계약 ..... 65
  - 가. 탈북 용역 계약 현황 ..... 65
  - 나. 탈북 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 ..... 66
  - 다. 탈북 용역 계약의 준거법 ..... 67
  - 라. 탈북 용역 계약 관련 기존 판결례 분석 ..... 68
  - 마. 탈북 용역 계약 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 ..... 71
4. 임대차관계 ..... 80
  - 가. 임대주택 지원 ..... 80
  - 나. 임대차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한 퇴거 ..... 80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정착지원금의 관계 ..... 81
  - 라. 임대주택 임차인 지위 승계 ..... 81
5. 국가배상 ..... 84
  - 가. 국가의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보호 책무 ..... 84
  - 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85

1. 형사사건과 북한이탈주민 ..... 89
  - 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한계 ..... 89
  - 나.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했던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 90

2. 북한이탈주민 관련 형사사건 현황과 특성 .....	91
가.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건 현황 .....	91
나.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형사사건 사례의 유형 .....	93
3.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 .....	103
가. 정착지원금 등 부정 수령 .....	103
나. 통장 대여나 보이스피싱 사기 .....	105
다.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 관련 .....	105
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	106
마.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	107
바. 마약류 관련 범죄 .....	108
4. 형사사건 지원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	108

---

<b>VI</b>	<b>복지 제도 법률 지원</b>	<b>111</b>
-----------	--------------------	------------

---

1. 복지제도 .....	113
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제도 .....	113
나. 복지제도 일반 .....	116
2.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수급 관련 문제 .....	120
가. 급여 문제 일반 .....	120
나. 주거 지원 관련 문제 .....	122
다.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 문제 .....	123
라. 압류 .....	125

---

**VII**      **교육지원 및 취업·창업 지원**      **129**

---

- 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 131
  - 가. 학력인정제도 ..... 131
  - 나. 대학특례입학제도 ..... 132
  - 다. 교육비 지원 ..... 134
  - 라.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 136
-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 137
  - 가. 법적 근거 ..... 137
  - 나. 주요 내용 ..... 138
- 3.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제도 ..... 144
  - 가. 법적 근거 ..... 144
  - 나. 주요 내용 ..... 144

---

**VIII**      **법률구조 및 법원 소송구조**      **1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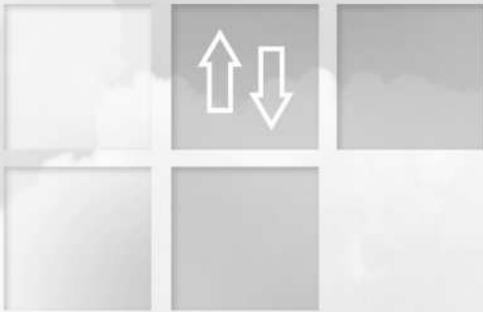
- 1. 법원의 소송구조 ..... 149
  - 가. 개괄 ..... 149
  - 나. 구조의 요건 ..... 150
  - 다. 소송구조 대상 및 절차 ..... 151
- 2.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 153
- 3. 헌법소원심판의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 154
  - 가. 개괄 ..... 154
  - 나.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 및 절차 등 ..... 155
  - 다. 국선대리인의 보수 ..... 156

4.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	156
가. 개괄 .....	156
나.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및 절차 등 .....	157
다. 국선대리인 보수 .....	157
5.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	158
가. 개괄 .....	158
나. 법률구조 신청 등 절차 .....	158
6.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구조 .....	160
가. 개괄 .....	160
나. 법률구조 신청절차 .....	160
다. 소송비용의 처리절차 .....	161
7.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원조사업을 통한 법률구조 .....	162
가. 개괄 .....	162
나. 법률원조의 요건 .....	162
다. 법률원조의 절차 및 변호사 보수 등 .....	163
8. 그 밖의 법률구조 활동 .....	165
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	165
나. 법무부의 법률상담 .....	165
다.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연계 .....	165



# I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 I Chapter I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 1 북한이탈주민의 의의 및 현황

#### 가. 북한이탈주민의 의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조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예를 들어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역시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라고 불렀으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 ‘귀순북한동포’, ‘귀순동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용어가 제정되었으나 일반인 사이에서는 ‘탈북자’란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고, 다만 탈북자는 ‘북한에서 탈출한 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5년 통일부는 ‘새터민’(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새 명칭을 여론 조사 끝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새터민’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있자,<sup>1)</sup> 정부는 2008년 ‘새터민’ 명칭 사용을 자제할

1) 탈북민 단체들은 ‘탈북자’라는 말에는 “폭압적인 북한정권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수용소와 같은 그 땅을 탈출한

것을 발표하였고, 이후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sup>2)</sup>

## 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현황

2022년 6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33,834명으로 파악되고,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국내 입국 현황<sup>3)</sup>〉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여성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월 (잠정)	합계
남(명)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3	9,478
여(명)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16	24,356
합계(명)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19	33,834
여성비율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36.5%	84.2%	72.0%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그 입국인원이 2,914명으로 3,000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접경지역 경계 등의 강화로 인하여 입국 인원이 감소하여 연 1,000명~1,600명이 입국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북중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그 본질적 의미를 은폐하고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소멸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Daily NK, 2008. 11. 21.자 기사 <https://www.dailynk.com/%ED%86%B5%EC%9D%BC%EB%B6%80-%EC%83%88%ED%84%B0%EB%AF%BC%EC%9D%B4%EB%9E%80-%EC%9A%A9%EC%96%B4-%EA%B0%80%EA%B8%89%EC%A0%81-%EC%95%88%EC%93%B8/>, (2022. 10. 6. 확인).

2)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27쪽, 각주11.

3)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22. 8. 26. 확인).

국경통제,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입국인원이 229명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63명, 2022년 6월까지 19명이 입국하는 등 입국 인원이 급감하였습니다.

성비의 경우 여성의 입국 비율이 1998년에는 12.2%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이후 50%를 넘겼고 2022년 6월 현재 여성이 72%를 차지합니다.

연령대별 입국현황을 보면 20-39세가 가장 많고 40대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 〈연령대별 입국현황, 2022년 6월말 기준〉<sup>4)</sup>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51	1,705	2,623	2,157	1,395	586	352	9,469
여	646	2,106	6,967	7,554	4,607	1,460	995	24,335
합계(명)	1,297	3,811	9,590	9,711	6,002	2,046	1,347	33,804

※ 입국당시 연령 기준임.

출신지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가 가장 많고, 양강도, 함경남도 순입니다.

#### 〈재북 출신지역별 현황표, 2022년 6월말 기준〉<sup>5)</sup>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계
													(재외 등)	
남	224	75	1,558	77	458	377	474	777	4,850	270	185	46	98	9,469
여	377	89	4,453	163	655	507	338	2,105	14,995	203	285	33	132	24,335
합계(명)	601	164	6,011	240	1,113	884	812	2,882	19,845	473	470	79	230	33,804

지역별 거주현황은 경기도가 10,87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6,696명으로 다음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비율이 65%에 달합니다.

4)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22. 8. 26. 확인).

5)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22. 8. 26. 확인).

〈지역별 거주현황표, 2022년 6월말 기준〉<sup>6)</sup>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100	2,779	780	236	227	236	134	278	365
여	4,596	8,091	2,122	684	905	831	506	1,111	1,422
합계	6,696	10,870	2,902	920	1,132	1,067	640	1,389	1,787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23	215	128	146	110	117	76	8,050	
여	424	688	465	509	435	355	269	23,413	
합계	547	903	593	655	545	472	345	31,463	

※ 사망, 말소, 이민, 거주불명,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 제외

##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정착 과정

### 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

남북하나재단이 2015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sup>7)</sup>에 따르면, 탈북 결심 이유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전체의 47.9%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따라서’가 14.1%, ‘신변 위협’ 10.7%, ‘먼저 탈북한 사람의 권유’ 7.1%,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5.4%, ‘주변사람의 권유’ 4.8%, ‘통제가 싫어서’ 3.7%, ‘가족을 찾거나 결함을 위해서’ 3.1%,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1.5%, ‘기타’ 0.7%, ‘남한의 문화를 접하고 난 후(미디어 등)’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sup>8)</sup>

남북하나재단이 2021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sup>9)</sup>에 따르면, 탈북 동기는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가 2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식량

6)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22. 8. 26. 확인).

7) 2014년 12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만 13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4,850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 중 3,000명을 조사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2,419명이 응답하였습니다.

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 2015년, 119쪽.

9) 2020년 12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9,880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 중 3,000명을 조사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2,461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부족해서' 21.6%, '가족(자녀 등)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0.7%,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sup>10)</sup>

2015년만 해도 식량 부족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다면, 최근에는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가 탈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는 등 탈북 동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 및 정착 과정

북한이탈주민은 보통 북한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한 후, 제3국 내 대한민국 외교공관을 통하여 남한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서 위명호구를 취득하여 중국인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남한으로 입국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몽고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기도 합니다.<sup>11)</sup>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제3국을 통하여 입국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코로나 발생 후에는 중국국경을 넘기가 어렵게 되면서 중국에서 위조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 입국 후 장기간 중국인 신분으로 생활하다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자수하는 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sup>12)</sup>

10) 남북하나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22년, 42쪽.

11)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29쪽 그림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12) 필자는 2013년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들(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법률강의 및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들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위명호구를 취득한 후 중국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들이었습니다. 국내 입국 직후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 하나원에 입소하거나 입국 후 중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어떠한 계기에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히고 하나원에 입소한 이들이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입국 경로<sup>13)</sup>〉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sup>14)</sup>

#### (1) 북한 탈출 준비 단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지만, 엄격한 통제사회인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사전에 은밀하고도 치밀한 탈출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 떠날 것인지, 가족 중 누가 떠날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탈북할 것인지 등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수년이 소요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탈북 브로커의 도움이 일상화되면서 수 개

1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30쪽.

14) 이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지침서」, 2020년, 12-15쪽의 내용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31-33쪽의 내용을 편집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내용은 하나원 자문변호사로서 필자가 지득한 사실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 또는 수 주만에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북중 국경경비 강화 및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브로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북한 탈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 북한에서의 탈출 단계

최근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80% 이상이 탈북 당시 남한을 최종목적지로 정하고 있었고, 탈북방법은 대다수가 몰래 강을 건너는 방법, 또는 국경경비대나 군대에 뇌물을 주고 그들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체포당할 위험을 극복해야 하며, 식량과 물의 부족, 추위·더위 등 극한의 상황, 신체적인 상처나 손상, 극단적으로는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껏 쌓아 왔던 사회적 신분과 재산 등을 포기하고, 가족과도 생이별하며 미지의 세계로 떠나면서 느꼈던 불안감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위와 같은 극단적인 위험들로 가득한 탈출 과정의 경험은 자신감, 성취감, 안도감 등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당시 느꼈던 불안감, 고독감, 주위에 대한 불신감, 신체적 고통 등이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 (3) 제3국 체류 및 초기 입국 단계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합니다. 여성의 경우 반강제 매매혼을 통해 중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여성이 남한에 들어온 이후에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 문제, 중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의 국적 및 입국 문제 등이 중요한 법률문제가 됩니다.

한편, 재중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으로 입국하는 이들의 80~90%는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게 되는데, 이러한 탈북 브로커의 상당수는 이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이 직접 다시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 현지인 탈북 브로커와 연계하여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으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sup>15)</sup>

북한이탈주민들은 제3국 내 대한민국 외교공관 등에 진입한 후에 해당 국가 이민국 수용

15) 송인호, 「통일법 강의 개정판」, 2019년, 276쪽.

시설 등에서 오랜 시간을 대기하거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마련해준 숙소 등에서 생활하며 입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에 보호신청을 하면, 외교부는 즉시 통일부 등에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주재국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사실 관계 조사를 받습니다. 재외공관은 신원 확인 및 보호대상자 결정이 이루어지면, 주재국과의 입국교섭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을 지원합니다.

#### (4) 조사 및 임시보호 단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면 우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sup>16)</sup>에 입소하여 합동조사를 받게 됩니다. 합동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경찰청·국방정보본부·정보사·기무사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주관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당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가려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지원할 때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신원사항과 학력·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sup>17)</sup>

#### (5) 정착준비 단계

합동조사가 종료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sup>18)</sup>(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하여 12주의 사회적응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기숙하면서 심리상담 및 생활지도와 함께 사회적응 및 기초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학력자격의 인정, 의료 및 생활보호대상자 편입 등을 위한 기초자료가 정리됩니다. 하나원에서 지역거주지 배정을 받은 후 남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16) 종전에는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불렸으나, 2014. 7. 28.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을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28659호'로 2018. 2. 20. 일부개정 전까지는 법령상 조사기간은 180일 이내였습니다.

17) 자세한 내용은 본 매뉴얼 제2장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및 국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1999. 7. 8. 안성시에 개원한 통일부 소속 기관이고, 2012년 12월에는 강원도 화천군에 제2하나원을 개관하였습니다.

## (6)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단계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 후 각 거주지의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거주지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라고 불립니다)에서 2주간 집중교육을 받은 다음, 5년간 보호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과정<sup>19)</sup>〉

<b>보호요청 및 국내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li> <li>•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li> <li>•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li> </ul>
..... <b>국내입국</b> .....	
<b>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li> <li>•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li> </ul>
<b>보호결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li> <li>• 보호결정 세대 단위 결정</li> </ul>
<b>하나원 정착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응 교육(12주, 400시간)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li> <li>•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li> </ul>
..... <b>거주지 전입</b> .....	
<b>거주지 보호(5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li> <li>•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li> <li>•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li> <li>•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li> </ul>
<b>민간 참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li> <li>•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li> <li>• 정착도우미 제도 : 민간자원 봉사자 연계</li> <li>•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86명(정원기준)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li> </ul>

19) 통일부 정착지원과,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15쪽.

### 3 상담 및 법률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 및 법인식 이해<sup>20)</sup>

#### 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 이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정신적 외상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압박으로 인하여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북한 내 삶 및 탈북 과정에서의 경험<sup>21)</sup>

열악한 영양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분들이 있습니다. 기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불신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억압적인 체제에서의 생활, 다양한 형태의 폭력(구금, 고문, 처형의 목격 등)과 같은 외상적 경험을 하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적 제도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불안정하여 건전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국경을 넘는 과정이나 제3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공포를 체험하거나 강제 복송 경험, 투옥, 고문 등과 같은 외상적 경험을 한 개인들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혹은 반강제매매혼을 통한 결혼이나 취업, 또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을 경험하고 자녀와 이별하는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이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험들도 인하여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잠을 못 자거나 과도한 화, 우울, 불안을 보이거나 관계 단절, 잠수 타기, 격렬한 싸움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거나 신뢰하고 신뢰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거나 인관관계를 진정한 관심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실리적인 필요에

20)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을 일반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법률지원을 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사실판단을 통해 개인별로 다른 상황과 배경,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쉽게 상대방을 규정짓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1)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 매뉴얼」, 2011년, 13-14쪽.

의해 관계를 맺고 내치는 행동을 보여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 (2) 국내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sup>22)</sup>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제적 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 두고 온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신체건강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언어, 문화적 습관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회주의체제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기 주도적 삶을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감정표현이 직설적이고, 사고과정이 구체적이고 다소 이분법적인 경향이 있어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식, 언어, 행동 양식, 교통, 생활습관의 차이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남한에서 편견과 차별을 피하려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느라 긴장과 불안이 크고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 (나) 두고 온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 친척 등이 없이 정착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 그리움, 죄의식, 재정적 지원에 대한 압박 등도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요소입니다. 또한 남한에서 가족과 합류하게 된 이후에는 적응 과정에서 부부, 부모-자녀 간 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 (다) 신체건강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적 질환, 기아와 신체적 외상들로 인한 신체허약 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집에만 있는 분들은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지 않아 이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22) 위 자료, 15-17쪽.

## 나.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sup>23)</sup>

북한은 법을 계급사회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법은 정치의 수단으로서 정치가 법에 대하여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한 북한이탈주민 대학원생이 간담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우선적으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외우고 이를 생활하도록 교육받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법이란 매우 생소하고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동지교시와 김정일동지 말씀이라고 합니다. 고등중학교에 입학하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배우나, 이 역시 김일성 교시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교시와 말씀이 우선시하고 조선노동당의 지도원리가 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교육받게 됩니다. 북한주민에게 법이란 생소한 것이고 어찌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법의 지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인식과 대조적입니다. 북한에서는 법집행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복에 있을 때 뇌물 등을 이용하여 법집행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 남한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상당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법의 규범력을 낮게 보고 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법 영역에서는 자력구제를 통한 문제 해결 경향이 강해서 정착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법 영역에서는 북한의 경우 개인 간의 형사분쟁에 대해 사법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실정이라 개인 간 폭행은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남한 사회보다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여 가정 내 아동이나 아내에 대한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마약이 치료제로 사용되는 등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남한에서 마약의 소지, 투약, 운반 관련한 범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23) 이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지침서」, 2020년, 16~20쪽의 내용과 재단법인 동천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 북한이탈주민 대학원생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 지침서에 따르면 위 지침서 내용은 송인호, 2019. 9. 21.자 남북하나재단 워크숍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자세와 역할' 강연 자료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2014년)를 참고한 것입니다.

## 4 법률지원의 필요성 및 유의사항

### 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취약성

북한이탈주민 재·출소자 교정교화 관련 단체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전국 52개 교도소·구치소 중 31개소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재소자는 약 70명(남자 93%, 여자 7%)에 이릅니다. 범죄유형은 마약(33%), 성범죄(18%), 폭행·상해(8%) 등 강력범죄가 다수입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범죄유형 및 특이사항〉<sup>24)</sup>

범죄유형	마약범죄	성범죄	살인범죄	폭행·상해	교통범죄	기 타
유형별 비중	33%	18%	16%	8%	6%	19%
특이사항	- 마약, 성, 살인 등의 범죄가 남한의 일반범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재범(출소 3년 이내 범죄율) 비율이 높으며, 최근 여성 범죄 비율 증가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수는 152명으로 2015년 113명에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25)</sup> 수감된 이유로는 전체 152건 중 마약이 5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16건(10.5%), 강간 15건(9.9%)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5-2019 탈북민 수감자 현황〉

구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죄명별	계	113	135	144	149	152
	절 도	7	7	9	4	7
	폭행·상해	2	10	7	11	10
	사기·횡령	11	12	17	21	16

24) 통일부 제2하나원, 「2020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14쪽 인용.

25) 안민석 의원 블로그에 기재된 2020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블로그 주소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ms0506&logNo=222128044956>, (2022. 9. 26. 확인).

구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과 실 범	8	8	7	10	6
강 도	5	3	3	2	3
살 인	12	11	9	15	12
폭력행위	14	4	4	8	0
마 약 류	28	49	54	47	55
강 간	26	31	14	15	15
기 타			20	16	28

\* 매년 12. 31. 기준 수감자 현황임.

\* '강간'의 경우 2016년 이전까지 '기타' 죄명으로 구분해 왔음.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간 법문화, 법제도의 상이함, 남한의 법문화, 법제도 이해 미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 나. 상담 및 법률지원 시 유의사항

### (1) 언어, 문화, 삶의 경험의 이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오랜 분단기를 거치며 쓰는 단어, 용례, 억양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의사소통법(다소 직설적임)에 익숙해짐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법률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 북한에서의 생활 및 탈북 과정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들로 부터 신뢰를 얻고 법률지원을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의식,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은 성공적인 법률지원의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 (2) 북한이탈주민 내에서의 다양성을 인식(통합적 접근)

북한이탈주민 몇 명을 만나보고 북한이탈주민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남한도 지역별로 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북한은 지역 간 차이가 훨씬 큼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방송통신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정보의 공유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신분제적 특징(북한말로 '토대')으로 인하여 어떤 토대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지역, 신분, 직업, 학력 등에 따라 의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한 명 한 명이 각자 북한 사회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일반형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지양) 열린 마음으로 각 사람을 대하고 토대나 지역, 경험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바라보는 자세

북에서 왔다는 순간 얼마나 굶었는지, 주변에서 총살당하는 사람을 봤는지 묻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명적이고 우월한 존재인지 비춰보는 거울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지원에 있어 지양해야 할 자세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먼저 온 미래, 미래에 대한 예방주사,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바라볼 때 수행하는 법률지원이 더욱 보람차고 의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 (4) 법률조력자를 넘어 위로자의 역할<sup>26)</sup>

북한이탈주민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발생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단순히 법률조력자의 역할을 넘어 이들의 피해의식, 적개심,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에 깊이 공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준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 (5) 한 사람을 볼 때 그 가족, 그 마을까지 보는 시각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북에 두고 온 혹은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송금을 합니다. 한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남한에 사는 친척이 있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남한의 친척이 보내주는 돈이 있으

26)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지침서」, 2020년, 29-30쪽.

면 북에서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통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을 잘 도우면 그 사람 뒤에 있는 북한의 한 가정, 마을까지 돕는 나비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들 때 한 사람을 넘어 그 가족, 마을까지 돕고 있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 (6) 시간과 열정의 안배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남한에 의지할 누군가가 없기에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을 마냥 받아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일은 장기전입니다. 시간과 열정을 안배해야 합니다.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사건의 횟수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법률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도록 잘 안내하고 소개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5 주요 북한 용어<sup>27)</sup>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사용하는 용어 중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변호사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용어들을 소개합니다.

북한 용어	뜻
개준성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 먹을 가능성이나 요소라는 의미로 범죄 후 범자가 범죄에 대해 뉘우치는 등 형의 양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일반적 기준의 하나입니다.
거래세	생산물판매수입과 봉사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생산물의 판매가격과 봉사료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성격의 세금입니다.
검찰소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바로 집행하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뿐 아니라(우리의 검찰 기능) 우리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약	우리의 한약(韓藥)을 뜻합니다.

27)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344-357쪽에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추려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북한 용어	뜻
고려의학	한의학에 대한 북한식 표현입니다.
공민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공민증	나라의 공민임을 밝히는 법적인 증명 문건으로, 17세 이상의 공민에게 발급하며,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합니다. 공민증을 교부받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헌법상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합니다.
교양처분	징벌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되며, 사회적 감독과 교양을 통하여 시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근친자, 교육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에 보호감독을 의뢰하거나 국가기관에 보내어 실시합니다.
교화소	교도소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눅다	물건의 값이 일반 시세보다 낮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싼 가격을 뜻합니다.
돈자리	계좌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로동교화형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인신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한 육체적 노동을 시켜 육체적·정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로동단련형	범죄자를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로동교화형의 집행기간 동안은 공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되는 데 반해, 로동단련형 집행기간 동안은 공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됩니다.
료해	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미성인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성인: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비법	법에 어긋나는 일을 뜻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비법행위'라고 합니다.
살림집	가정을 단위로 하여 사람들이 살림을 하는 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아파트'는 '고층살림집'이라고 합니다.
손집	손으로 들어서 나를 수 있는 간단한 짐을 가리킵니다.
수형	우리의 '어음'에 해당합니다.
재판소	재판의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재판소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있습니다. 인민재판소는 시(구역), 군을 단위로 하여 설치되는 최하위의 재판소를 말하며, 특별재판소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습니다. 재판소는 우리의 '법원'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총화	사업이나 생활의 진행정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결속지으며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생산현장이나 협동농장 등 직장에서 일과가 끝나면 작업반별 또는 직장별로 작업총화를 합니다.
힘한 일	힘이 들지 않아 어렵지 않은 일을 뜻합니다.
호상	우리의 '서로' 또는 '상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후과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나 영향을 가리킵니다.
휘황하다	눈부시게 환한 것을 말합니다.



# II

##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및 국적





# II

| Chapter |

##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및 국적

### 1 주요 법률 이슈

북한에서 출생하여 탈북한 후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별도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북한 거주에 관하여 공민증 등 증거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중국 등 제3국 국적자로 인정되어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3국 국적 취득 시기, 부모 중 일방만 외국인인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치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적법상 한국 국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녀의 한국 국적 여부, 체류 비자 및 입국 방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3국을 거쳐 중국 등 외국인과 사실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남편의 입국과 국적 취득에 대한 상담 수요도 다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요건과 절차,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의 국적 및 체류 자격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 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절차

#### (1) 법적 근거 및 기본 원칙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호).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제3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함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함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제4조).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제7조)과 보호기준 및 보호결정의 기준(제5조, 제9조),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제8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보호결정 신청

##### (가) 보호결정 프로세스

제3국에서 보호를 요청하여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서 정착준비를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b>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b>	-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 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b>합동조사</b>	-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b>보호결정</b>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b>하나원 정착준비</b>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초기정착지원: 가족관계창설, 주거알선, 정착금, 장려금 지원 등

출처: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나) 보호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제3국에서 우리나라 재외공관장 등에 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 입국 후 보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3국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은 외교부 및 관계 부처에 상황을 보고한 후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의 임시보호시설에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합니다. 위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한 후 주재국과 입국 교섭을 하고, 국내 입국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 등’)에게 직접 보호를 신청하도록 하는 직접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직접 신청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동시행령 제10조) 가족이 먼저 탈북하여 정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 (다) 보호신청 기간

북한이탈주민법은 보호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제9조). 이전에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기준이었으나, 2019. 1. 15.에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 법(2020. 12. 8. 법률 제1756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경우에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상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자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3) 조사

#### (가) 조사 절차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신청을 하면 재외공관장등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2항). 해외공관장 등은 국가정보원장의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제2항).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조사 및 신변안전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등을 합니다(법 제7조 제3항, 제4항). 즉,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입국하면 위 임시보호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로 이동하여 국가정보원의 관할 하에 군, 검찰,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내용은 1. 출생지·직업·가족관계·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북한이탈의 동기·과정,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비보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 (나) 조사 기간

국가정보원의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12조의3). 북한이탈주민이 위 시설에 입소하여 176일과 165일 동안 조사를 받고 비보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법 구금 등의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비록 행정조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관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시설 내에 수용하면서 조사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 (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조사 과정에서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동시행령 제12조의 5). 인권보호관은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 인권침해 관련 민원 처리 지원, 임시보호시설 직원 대상 인권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나, 조사에 동석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인 乙 등이 甲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乙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고, 이에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로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을 당시 甲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당시 甲이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甲은 북한에서 자라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었고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의 진술은 접견교통권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乙 등의 甲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는 변호인에 대하여

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 (라) 조사 내용 정정 여부

조사가 종료되면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됩니다. 임시보호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 등이 이루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시 최대한 정확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추후 진술 내용을 정정할 법률적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4) 보호결정

국가정보원장은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합니다(법 제8조).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북한이탈주민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①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② 북한을 벗어난 후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법 문언으로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 판결). 북한이탈주민법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도록 하는 점 등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벗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가 되나 아래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동시행령 제12조).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5.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6.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7.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8.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감금·은둔·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련하여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약거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마약거래범죄자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지원시설 보호, 거주지 보호, 학력 및 자격 인정, 국민연금특례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객관적인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자 2012헌바192 결정). 북한이탈주민의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 거래가 북한이탈주민 비보호 결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무연고청소년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과는 구별되나, 최근 무연고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2022.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무연고청소년은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고, 무연고청소년에게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무연고청소년의 전화번호는 보호자를 통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11조의 2).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생활하는 학교·기관·시설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25조의 2). 위 법에서 보호자는 민법상 후견인과는 구별됩니다.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을 범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나. 보호결정 효과

#### (1)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정착시설장은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합니다(법 제12조). 보호대상자는 등록대장의 기록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하거나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법제14조). 그 외에도 사회적응 교육 등 여러 정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정착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착지원 제도 주요 내용〉<sup>28)</sup>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지역적응교육 (지역적응센터)	전국 지역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정착금	기본금	1인세대 800만 원, 2인세대 1,400만 원, 3인세대 1,900만 원, 4인세대 2,400만 원, 5인세대 2,900만 원, 7인세대 이상 3,900만 원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 원</li> <li>- 장애가산금: 1,500만 원(중증), 360만 원(경증)</li> <li>-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 시): 1개월에 80만 원(최대 9개월까지)</li> <li>-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 원</li> <li>-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 원</li> </ul>
주거	주택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세대 1,600만 원, 2인~4인세대 2,000만 원, 5인세대 2,300만 원(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 원</li> <li>- 자격취득 시 200만 원</li> </ul>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만 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14. 11. 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기타	취업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28) 통일부정착지원과,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 편람 16, 17면 표 편집.

## (2)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정착시설에서의 보호, 학력 인정, 자격인정, 직업훈련, 영농 정착지원,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이혼 특례, 주거지원(국내 입국 후 3년이 경과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거주지 보호, 국민연금 특례, 사회적응교육 등의 보호 및 특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3항). 한편, 법 제9조는 보호 결정과 보호대상자 결정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의 규정에서는 보호대상자를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보호나 지원을 받으면 보호대상자로 해석될 수 있는바,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 보호의 변경 및 취소

### (1) 보호의 변경

통일부장관은 아래 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27조).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북한이탈주민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거나 충분히 재산을 보유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외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나,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나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형사 사건 진행 시 양형과 관련하여 1년 이상 징역형 등을 받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2) 보호결정의 취소

보호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호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법 제33조). 특히 추후 중국 국적자임이 밝혀져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지원금을 몰수 또는 추징받게 되어 신분·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법리적으로 중국 국적자인지, 북한이탈주민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적 몰수·추징에 대한 위헌 제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 자격을 만들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부정수령의 차단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용된 방법의 불법성 정도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한하

여 몰수·추징하는 데 그치고,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경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에 비하여 책임이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자 2015헌가22 결정).

## 라. 비보호 결정에 대한 불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대상자와 아닌 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내용이 다릅니다.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비보호 결정 불복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보호의 재신청

비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은 비보호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외에도 다시 보호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초로 비보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재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18조). 비보호 처분을 다룰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2) 비보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비보호 처분은 받은 사람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 (3)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

비보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도 비보호처분을 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머니가 북한을 벗어난 후 중국에서 중국인과 낳은 자녀이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북한 중국인으로 위장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원고가 신원이 밝혀져 복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버지를 달리 기재하였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가 북한 주민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북한에 직계 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났으며 달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하여 통일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211 판결).<sup>29)</sup>

### 3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적 및 입국

#### 가.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우리나라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 자녀들은 북한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대법원은 “북한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대한민국

29) 피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 확정됨.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우리나라는 혈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중국 등 외국인의 자녀가 북한에 거주하여 북한의 공민이 된 자나 그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자도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조선인의 후손으로서 북한에서 거주하였으나, 중국 등으로 이민하여 적법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다시 북한에 입국하여 거주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A가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국적을 회복하여 중국 국적자임을 알고도 거짓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적은 본래 법률상의 개념이지만 때로는 사실상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경우, 본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법률상으로는 본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가지게 되므로 이중 국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 정부의 국적 관련 관서에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본국 국적 상실을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적 관련 서류나 전산에는 본국 국적이 그대로 남아 있게 돼 사실상의 국적자로서 본국 국적자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 이 때 본국 국적이 사실상 남아 있음으로 인해 사실상의 국적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법률상 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탈북 후 중국 국적을 회복하였다는 구성요건은 피고인이 중국 정부로부터 다시 중국 국적자로 대우받았다는 사실상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중국 국적법상 국적회복절차에 의하여 국적을 회복하였다는 법적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중국 국적법상 국적회복절차에 의하여 중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에서 호구부와 여권을 발급받는 등 사실상의 중국 국적자로 대우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sup>30)</sup> 위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법한 여권을 보유한 것으로 국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북한, 중국, 한국 국적법 규정에 따른 법률상 국적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30) 2019. 12. 24. 대법원 2019도12395 판결.

## 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적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므로,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자는 북한이탈주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법상 한국 국적자인 경우, 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제3국 출생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경우 복수국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 제3국 출생 자녀 국적 확인 및 가족관계 등록 절차

### (1)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자녀를 출산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모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출생신고 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여성이 중국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동일합니다. ① 자녀와 함께 하나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② 자녀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해주지 않으므로 하나원을 나간 후 주소지나 거주지 관할 시·구청 또는 동·읍·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의사나 조산사 등이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② 위와 같은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sup>31)</sup>

31) 법무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사례집, 42~44쪽.

## (2) 아버지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아버지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는 혼인 중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므로 위 절차와 동일합니다.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 또는 중국에서 위조호구를 이용하여 혼인 등기를 한 경우 등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인지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생국에서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등록을 마친 후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후 국적법 제3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국적법 제7조에 의한 특별귀화절차(자가 성년인 경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무장관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국적취득통보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sup>32)</sup>

## (3) 자녀가 혼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제3국 출생 자녀가 북한이탈주민인 부 또는 모가 없이 혼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적 판정을 신청하여 국적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적법 제20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점이 친척의 유전자 검사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주민의 자녀이나 중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국적 목사에게 맡겨져 자라던 중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적판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출생 당시에 그 친부모가 북한주민이었다면 원고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G(원고를 양육한 목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으며, 별다른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특히 위 증인은 미국 국적의 종교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 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까지 가감 없이 증언하는 등 상당히 진술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에 강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진술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원고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8. 16. 2018구합4182).

32) 법무부, 앞의 법률상담사례집, 44쪽.

## 라.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적 선택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만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위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sup>33)</sup>

이와는 별개로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한국 국적 취득으로 중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 북한이탈주민 자녀 입국 방법, 체류

부 또는 모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하기 위하여는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호구가 없다면 중국인 배우자의 호적에 올려 호구를 취득한 후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주중 한국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에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에 단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단기방문비자(C-3)를 받으면 되고, 중국의 자녀가 한국에 영주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거주비자(F-2)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거주비자(F-2)를 받기 위하여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33) 법무부, 앞의 법률상담사례집, 86, 87쪽.

수 있는 공적 서류,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중국에 있는 보호자(친권자)의 친권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나 판결문(이혼조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출생신고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를 연장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sup>34)</sup>

## 4 중국인 배우자의 입국 방법 및 체류 국적 취득

### 가.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방법

국민의 배우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단기방문비자와 결혼이민비자가 있습니다. 단기방문비자와 결혼이민비자를 받기 위하여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탈북 여성이 탈북 후 중국 체류 중에 중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과 국제결혼을 거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결혼이민비자(F-6-1)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국제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자의 자녀를 중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양육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 결혼비자(F-6-2)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중국인 배우자의 체류 및 귀화

단기방문비자나 결혼이민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더 오래 체류하려면 국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절차를 밟으면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혼비자(F-6)는 최대 3년의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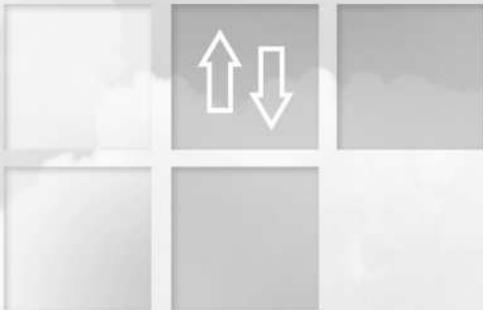
34) 법무부, 앞의 법률상담사례집, 72, 73쪽.

기간이 부여됩니다.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중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 배우자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 III |

## 가사 분쟁





# III

| Chapter |

## 가사 분쟁

### 1 가사사건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기존의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의 일부 또는 홀로 입국하게 되면서 국적, 가족관계등록 같은 문제부터 혼인과 이혼, 인지, 자녀의 양육 등 가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 서류나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 관계에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 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2(이혼의 특례) 규정을 적용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가사 관련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기 위한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사사건 사례의 유형

### 가. 가족관계 등록·주민등록표·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주민등록표는 거주지 파악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써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북한이탈주민 진술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까지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남한 입국 이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먼저 탈북하여 입국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세대주나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라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외로 이주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거주지 시·군·구청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원에서 그곳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하여 변경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최근에는 최초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부여받게 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출생일자가 잘못되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 외에는 앞의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의 첫 자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개명신청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남한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아 개명신청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척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는 북한이탈주민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이름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만일 개명을 원하는 경우, 하나원 과정을 마친 후 가족관계등록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법원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 **기재례**
  
- **신청취지**  
 등록기준지 경기도 광명시 삼죽면 삼죽로 112의 청구인 겸 사건 본인의 이름 “000(한자: 000)”을 “000(한자 000)”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결론**

#### 다. 성과 본 변경

북한에서 결혼 후 자녀를 낳은 경우 함께 탈북하여 어머니의 성 또는 새로 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소지의 가사비송절차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에서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 기본증명서(신청인)
- 주민등록표등·초본(신청인)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위임장

**- 기재례**

**- 신청취지**

등록기준지 경기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의 신청인의 성 “황(黃)”을 “신(申)”으로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라. 혼인 일반

대한민국에서 혼인은 혼인에 대한 실질적 의사합치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혼인에 대한 실질적 의사합치가 없다면, 법률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취업이나 다른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한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형법 제228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29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당시 북한이탈주민은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인 남편과 혼인하였다고 해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중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려고 할 경우, 국제결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하고,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 비자를 받은 경우 한국에 입국해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인 배우자는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호구부를 사서 혼인신고 후 살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경

우 법률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무효의 혼인이 되므로 미혼 상태라 할 것이며, 다시 혼인하려면 먼저 무효인 중국 호구 상 혼인의 상태를 중국 내 이혼재판 등으로 해소한 후, 국제결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중국에서 중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별도의 국적취득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만으로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1998. 6. 4. 이후 출생자는 출생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출생자는 법무부에 국적취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부부 쌍방의 진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재판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을 거친 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력 등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부부 일방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자신 또는 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변론, 판결, 이혼신고 등의 절차에 따르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사자 쌍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일방이 재산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한 재산분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1) 북한의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

법원은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북한의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중의 일방만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였으나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북한에서의 결혼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에는 북한에 있는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한다면 나중에 남한에서 새로 혼인을 하더라도 북한에서의 혼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남한에서 한 후혼이 중혼이 되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 통일부에 북한의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재북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그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만일 북한에서 결혼했던 배우자가 먼저 남한에 와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고 있으나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남편이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 그 배우자가 이혼판결을 받아두었다면 그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교부 받아 이를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그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배우자의 허위진술로 혼인 사실이 처음부터 누락된 경우라면 북한에서의 혼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후혼에 대해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
- 송달료 납부서
- 소송 위임장
- 소장 부분

**-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작성)

\*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속히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 북한에서 이미 이혼을 한 경우

북한에서 이미 이혼을 한 경우라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알리고 검증과정을 거쳐 배우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만일 결혼사실은 진술하였으나 이혼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다면 하나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북한에서의 남편이 배우자로 기재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중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 등 국적이 다른 배우자 간의 결혼은 국제결혼이라 합니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이혼 절차인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방식 중 해당하는 경우의 절차를 따르며 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혼인한 배우자가 중국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그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소 제기 후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면 배우자의 출입국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여 공시송달 등의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사. 위장결혼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

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sup>35)</sup>

위장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확인소송은 일반 이혼소송과는 달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합니다. 혼인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무효 확인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완전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혼인신고와 관련된 기재 자체가 현출되지 않도록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장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통한 혼인관계 해소가 어렵습니다. 만일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동거가 있었거나 일부 결혼생활의 형태를 띠며 살았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유의할 점은 동거 등 실질적 혼인 관계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대방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울산지방법원 2016고정519호)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인지의 청구

### (1)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추정이 됩니다. 남한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이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추정의 효력을 받는 경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sup>36)</sup>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

35) 법무부(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118-119쪽 참조.

36) 법무부(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21쪽 참조.

하기 위해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족법이나 상속법상 중요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의 소송은 이로 인해 법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는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살아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가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6조 제2항).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자 검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유전자검사인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 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 참조). 판례는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서 유추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이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참조). 직접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경우로 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친족과 간접적인 유전자검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증
- 국군포로 가족확인서
- 병적증명서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유전자 시험성적서
- 족보
- 주민등록등본

**- 청구취지**

원고와 망 000(주민등록번호 : 0000. 0. 0.생, 등록기준지: 00도 00시 00면 00리 00번 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인지의 청구**

친생자관계 확인으로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는 인지의 청구로 변경할 것을 석명하기도 합니다. 인지는 부모가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시키는 임의인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 부모-자녀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상 인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도 어머니와 모자관계가 인정되지만 아버지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를 거쳐야 법적인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sup>37)</sup> 북한에서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모두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관하여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와 동등하게 보는 점은 같지만 남한에서는 이에 대해 인지절차 등 부자관계 성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sup>38)</sup>

**자. 양육비·면접교섭·친권**

**(1) 양육비**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비용을 ‘양육비’라 하며 양육비는 일상생활에서 의식주, 교육, 의료, 기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합니다.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표준 양육비에 해당 가정의 가산, 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과 관련해서 총 양육비 총액에 각

37) 법무부(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21쪽 참조.

38) 법무부(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21쪽 참조.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양육자가 60%를 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대표번호: 1644-6621)을 통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조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자녀 안 나이	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만 원 이상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799만 원	899만 원	999만 원	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0~2세	0~2세	621,000	752,000	945,000	1,098,000	1,245,000	1,401,000	1,582,000	1,789,000	1,997,000	2,095,000	2,207,000
	264,000~ 686,000	687,000~ 848,000	849,000~ 1,021,000	1,022,000~ 1,171,000	1,172,000~ 1,323,000	1,324,000~ 1,491,000	1,492,000~ 1,685,000	1,686,000~ 1,893,000	1,894,000~ 2,046,000	2,047,000~ 2,151,000	2,152,000 이상	
3~5세	3~5세	631,000	759,000	949,000	1,113,000	1,266,000	1,422,000	1,598,000	1,807,000	2,017,000	2,116,000	2,245,000
	268,000~ 695,000	696,000~ 854,000	855,000~ 1,031,000	1,032,000~ 1,189,000	1,190,000~ 1,344,000	1,345,000~ 1,510,000	1,511,000~ 1,702,000	1,703,000~ 1,912,000	1,913,000~ 2,086,000	2,087,000~ 2,180,000	2,181,000 이상	
6~8세	6~8세	648,000	767,000	959,000	1,140,000	1,292,000	1,479,000	1,614,000	1,850,000	2,065,000	2,137,000	2,312,000
	272,000~ 707,000	708,000~ 863,000	864,000~ 1,049,000	1,050,000~ 1,218,000	1,217,000~ 1,385,000	1,386,000~ 1,546,000	1,547,000~ 1,732,000	1,733,000~ 1,957,000	1,958,000~ 2,101,000	2,102,000~ 2,224,000	2,225,000 이상	
9~11세	9~11세	667,000	782,000	988,000	1,163,000	1,318,000	1,494,000	1,630,000	1,887,000	2,137,000	2,180,000	2,405,000
	281,000~ 724,000	725,000~ 885,000	886,000~ 1,075,000	1,076,000~ 1,240,000	1,241,000~ 1,406,000	1,407,000~ 1,582,000	1,583,000~ 1,768,000	1,769,000~ 1,944,000	1,945,000~ 2,048,000	2,049,000~ 2,158,000	2,159,000~ 2,292,000	2,293,000 이상
12~14세	12~14세	679,000	790,000	998,000	1,280,000	1,423,000	1,598,000	1,711,000	1,984,000	2,159,000	2,223,000	2,476,000
	295,000~ 734,000	735,000~ 894,000	895,000~ 1,139,000	1,140,000~ 1,361,000	1,362,000~ 1,510,000	1,511,000~ 1,684,000	1,685,000~ 1,847,000	1,848,000~ 2,044,000	2,045,000~ 2,191,000	2,192,000~ 2,348,000	2,349,000 이상	
15~18세	15~18세	703,000	957,000	1,227,000	1,402,000	1,604,000	1,794,000	1,964,000	2,163,000	2,246,000	2,540,000	2,883,000
	319,000~ 830,000	831,000~ 1,092,000	1,093,000~ 1,314,000	1,315,000~ 1,503,000	1,504,000~ 1,699,000	1,700,000~ 1,879,000	1,880,000~ 2,063,000	2,064,000~ 2,204,000	2,205,000~ 2,393,000	2,394,000~ 2,711,000	2,712,000 이상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자료: 서울가정법원

## (2)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 하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에 따라 어느 한 쪽을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참조). 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양육권이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로 친권이 양육권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을 때 부모 중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방 또는 쌍방으로 하거나 각각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개인적, 종교적 신념으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무교육 거부, 재산의 부적당한 관리 등의 자녀 양육에 있어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한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판단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나 친권상실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부재하거나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된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친권을 남용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sup>39)</sup>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양육을 대신할 친족 등이 부재하여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전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신청권자로 하여 지자체, 검사 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대안학교장이나 신뢰할만한 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청구하여 친권상실 및 후견인지정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3) 면접교섭

직접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권한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며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직접적인 만남, 편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라고 하여도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막을 수는 없고, 만일 이를 제한하려면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지만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

39)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항). 만일 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이를 이행하도록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차.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권제한 등

가정폭력이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공갈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가정폭력범죄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가지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범죄 수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폭행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신청,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긴급전화센터(국번 없이 1366)에 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신고, 상담, 임시 보호, 응급조치, 병원 후송 등의 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 가정폭력이 있거나 자녀 양육에 현저하게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본 매뉴얼 제5장 형사 파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IV |

## 민사분쟁





# IV

Chapter I

## 민사분쟁

###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사 판결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절차를 이용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는 형사·가사와 관련된 것이나 행정법관계에서의 문제보다는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련된 것이 많은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상황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2년 단위 검색을 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되는 공개된 민사 판결문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 키워드로 총 160건, “탈북” 키워드로 총 74건의 민사 판결문이 검색됩니다.<sup>40)</sup>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검색 결과 민사판결문 수〉

2013. 1. ~ 2014. 12.	2015. 1. ~ 2016. 12.	2017. 1. ~ 2018. 12.	2019. 1. ~ 2020. 12.	2021. 1. ~ 2022. 9.	총계
19건	60건	45건	21건	15건	160건

40) 그 중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된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된 사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언론보도, 사업, 북한이탈주민이 일부 언급된 법령상 규정과 관련한 사건 등에 관계되었을 뿐 북한이탈주민을 당사자로 하지 않는 사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키워드 “탈북” 검색 결과 민사판결문 수〉

2013. 1. ~ 2014. 12.	2015. 1. ~ 2016. 12.	2017. 1. ~ 2018. 12.	2019. 1. ~ 2020. 12.	2021. 1. ~ 2022. 9.	총계
3건	31건	24건	10건	6건	74건

위 검색결과는 공개된 판결문만을 보여주는 점, 당사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이나 탈북을 한 사실이 쟁점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판결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건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당사자로서 겪은 민사사건 판결의 수는 위 판결의 숫자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법률상담 현황상 민사에 관한 법률상담 요청이 가사나 형사, 행정에 관한 법률상담 요청보다 더 많습니다.<sup>41)</sup>

위 판결문 검색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신원정보의 취급이나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집회나 입국 후 조사 등의 과정에 관한 국가배상 사건, 탈북 과정에서 체결한 브로커 계약에 관한 사건, 임대주택 기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건, 일반적인 약정금·보증채무,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자주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부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민사사건으로는 브로커 비용에 관한 문제, 명의대여, 금전대여, 보증, 부동산 거래, 근로관계에 관한 상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sup>42)</sup> 통상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북한이탈주민 특유의 사건이 문제되기보다는 일반적인 법률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sup>43)</sup>

탈북 과정에서 체결한 브로커 또는 도우미 계약에<sup>44)</sup> 관한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특유한 문제로서 자주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결문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공통된 쟁점이나 법리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관계 및 국가배상에 관하여도 일부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1)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 지침서, 2020년 개정판, 8쪽

42) 법무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법무부 통일법무과, 2021. 8. 164쪽 이하

43) 이학인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4, 2015. 11. 63쪽

44) 경제적 대가를 받고 중국 등지에서 경유국을 거쳐 남한으로의 입국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상 이와 같이 지칭하나, ‘브로커’라는 명칭이 사기성을 내포하는 점을 고려하면 브로커 계약이라는 표현 대신 ‘탈북 용역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타당한 지적에 따라, 이하에서는 표현을 ‘탈북 용역 계약’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김영기,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실무례, 통일과 법률 제22호, 법무부, 2015. 6.).

## 2 민사사건 법률지원 시 유의사항

### 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법의식 이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판절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미 관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법제도는 물론 재판의 진행 과정이나 기본적인 절차적 사항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공격과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률용어를 알지 못하여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법정에 대한 두려움, 억울한 처분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으려는 경향, (특히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차별 받는다는 인식,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금전적으로 매수될 수 있다는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sup>45)</sup>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당사자인 법률문제를 지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분쟁상황과 진행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므로, 법률상담 시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민사재판의 개시, 소장 이후의 절차, 상소권, 지급명령이나 화해, 조정과 같은 절차, 소송구조의 신청방법, 판결문의 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sup>46)</sup>

북한이탈주민은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이라 무시를 당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sup>47)</sup>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으로 법을 주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도구로 인식하고, 법률의 공정성이나 규범력,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나 법률상 권리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력구제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에 익숙

45) 이학인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4, 2015. 11. 90쪽, 109쪽 이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 지침서, 2020년 개정판. 17쪽

46)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 2017. 2. 26쪽 이하

47) 이학인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4, 2015. 11. 88쪽

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sup>48)</sup>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경청하며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어의 차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 때문에 법률문제에 관한 대화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법률용어나 법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원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피해의식,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인내하며 이야기를 듣는 위로자의 역할, 향후 한국사회와 제도의 이해를 돕는 조언자·안내자의 역할도 함께 할 것이 권장됩니다.<sup>49)</sup>

#### 나. 소송비용 및 경제적 상황 고려

북한이탈주민이 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전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이 점을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담보제공명령은 북한이탈주민인 당사자에게 생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본안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과 달리 보전처분의 요건은 소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일 본안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마찬가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임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현금공탁 외에 보증서의 제출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이 때 보증서는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31호, 시행 2008. 7. 1.)

48) 이학인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4, 2015. 11. 99쪽 이하

49)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 지침서, 2020년 개정판. 29-30쪽

## 제2조 제1호].

채권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 가급적 담보제공의 부담이 적은 것을 선별합니다. 보증서로 담보를 갈음할 때의 보증금액은 ①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의 경우 청구금액 중 원금의 1/10,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의 2/5입니다(위 재판예규 제6조 제1항 본문 및 각호). 한편 급여채권(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금 등)이나 영업자예금채권(영업자가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보증서의 제출로 담보제공을 갈음할 수 없으므로 담보를 전액 현금공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위 재판예규 제6조 제1항 단서).

이외에도 소 제기 시 인지대·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상당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사전에 설명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은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 매뉴얼의 소송구조편 참조).

### 3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법률문제 - 탈북 용역 계약

#### 가. 탈북 용역 계약 현황

북한이탈주민에게 특수한 민사상의 법률문제로는 ‘탈북 도우미’나 ‘탈북 브로커’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는 탈북 용역 제공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에 관한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의 약 80% 내지 90%가 남한 입국 과정에서 탈북 용역 제공자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몽골을 통하는 북방경로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통하는 남방 경로가 개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sup>50)</sup> 그러나金正은의 집권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용역 제공자의 숫자도 줄어 기존의 탈북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 협력 체계가 와해될

50) 송인호, 탈북 브로커 계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인권과정의, 2012. 2. 46-47쪽

지 모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sup>51)</sup>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의 가능성이 있고, 상기와 같이 용역 제공자의 숫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이나 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탈북이 발생할 경우 용역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더 많은 변수가 개입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탈북이 어려워지면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지난 2020년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이었으나 2022년 현재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되기도 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큼니다.<sup>52)</sup> 한편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판결문 검색 결과, 2019년 이후 확정된 민사 판결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아직 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변호사로서는 여전히 탈북 용역 계약의 성격과 쟁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탈북 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

탈북 용역 계약은 ① 북한이탈주민이 용역 제공자에게 중국 위안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남한에서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후 일정 금액을 용역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각서하는 방식('지불 각서 형식'), ② 용역 제공자나 그 관계자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차용증 형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sup>53)</sup> 이는 모두 직접 계약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용역 제공자나 그 관계자로부터 남한에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제공 받기로 하면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남한 도착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제3자를 포함한 계약형태도 존재합니다. ① 이미 남한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용역 제공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등지에서 체류 중인 나머지 가족이나 지인을 데려오도록 하는 방식이나(제3자를 위한 계약형), ② 소위 '돈주'가 용역 제공자에게 돈을 투자하고, 용역 제공자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에 입국시켜주면, 북한이탈주민이 '돈주'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이 있으며(제3자 개입에 의한 계약형), 이 경우에

51) 김영권, 탈북 브로커들 코로나로 직업 바뀐 네트워크 와해 위기...탈북민들에 타격, VOA, <https://www.voakorea.com/a/6220383.html>, (2022. 10. 4. 확인)

52) 채널A, 북한의 국경 봉쇄로 8천만 원까지 폭등한 탈북 비용?, VODA, <https://voda.donga.com/Brand/Clip/3/all/39/3488038/1>, (2022. 10. 4. 확인)

53) 송인호, 탈북 브로커 계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인권과정의, 2012. 2. 47쪽

는 용역 제공자가 중국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중국 등 외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sup>54)</sup>

탈북 용역 계약은 그 유형이나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핵심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가족·지인)은 ‘남한으로의 안전한 입국 지원’의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 제공자나 그 관련자·투자자는 그 대가(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탈북 용역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위임 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송인호)와 위임·도급·고용계약의 요소가 결합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됩니다(김영기). 이에 관하여 법원은 일부 위임계약이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sup>55)</sup>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북 용역 계약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 하나의 전형계약으로 한정되기는 어렵고, 위 하급심 판결의 취지도 당해 사건의 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판단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 용역 계약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및 정착이라는 일의 완성(결과채무)을 요하고 용역 계약 당사자와 실제 노무 제공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노무의 일신전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지만, 상당한 신뢰관계를 요하고 위탁 목적을 위한 사무 처리상 다소의 자유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합의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적용법조를 달리하고 다양한 소송전략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 탈북 용역 계약의 준거법

탈북 용역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법인지, 외국의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논의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탈북 용역 계약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과 국적 취득, 정착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브로커 비용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추정된다는 견해와(송인호), 계약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가 있고, 계약 체결지, 용역 제공자의 상거소나 의무이행지가 국외의 장소인 경우가 많아 외국적 성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계약이라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26조에 따라<sup>56)</sup> 준거법을 개개의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54) 김영기,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실무례, 통일과 법률 제22호, 법무부, 2015. 6. 10-11쪽

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9628 판결, 같은 법원, 같은 날 선고 2008나9918 판결

56) 제25조(당사자 지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한다는 견해(김영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더욱 합리적이나, 외국에 소재한 용역 제공자나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무상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이에 준거법의 구별이 문제된 판결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라. 탈북 용역 계약 관련 기존 판결례 분석

2010년 이전의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대체로 탈북 용역 계약이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5다9867 판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8652 판결은 이러한 ‘브로커 계약’에 관하여 “① 신변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피고(북한이탈주민)로서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제안에 그 약정의 의미나 법적효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와 같은 약정을 맺지 않을 수 없는 점, ② 탈북 브로커가 대한민국 입국을 알선하는 데에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 피고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근근이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살아가고 있는데, 위 약정금은 피고의 생활수준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는 정착금의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다액으로서 이를 지급할 경우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104조를 위반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8652 판결

대한민국 입국 알선업자가 입국자금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착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체결한 약정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한 사례

#### 사실관계

북한이탈주민 피고는 2004.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체류 중 대한민국 입국 알선업자 김OO에게서 “500만 원을 차용하고 하나원 수료 후 3일 이내에 갚고, 위반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김OO에게 교부함

피고는 몽골 국경수비대에게 붙잡혔다가 2005. 이태 한국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김OO이 피고를 찾아가 위 5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2005. 12. 31.까지 변제하되, 위반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함

#### 소송경과

1심 : 원고 청구 인용

2심 : 원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주요 판시사항

① 김OO은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탈북자들과 사이에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착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탈북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실, ② 신변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채 상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자들로서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제안에 그 약정의 의미나 법적효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와 같은 약정을 맺지 않을 수 없는 사실, ③ 피고도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김OO이 피고에게 탈북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거나 대한민국의 입국을 알선하는 데에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피고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대한민국 입국을 알선하여 준 박OO에게 알선료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⑥ 피고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위 약정금은

피고의 생활수준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의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다액으로서 이를 지급할 경우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약정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해당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도 있고,<sup>57)</sup> 탈북 브로커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용역 제공자가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어,<sup>58)</sup> 사안에 따라 민법 제104조의 요건 충족 여부, 계약상 반대급부의 이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권 위조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탈북 브로커 계약 과정에서 폭력, 강박 등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제104조에 따라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탈북의 경로와 브로커의 노력의 정도, 위협의 정도, 동행 여부, 통상의 비용과 계약상 비용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며, 무효·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137조 단서에 의해 일부에 대한 무효·취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sup>59)</sup>

민법 제1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탈북 용역 계약의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 편입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탈북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용역 제공자가 약정한 노무의 내용이 불법행위나 기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는지, 이를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데 동의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7) 수원지방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45526 판결, 같은 법원 2007. 7. 20. 선고 2006나26127 판결

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9628 판결, 같은 법원 같은 날 선고 2008나9918 판결

59) 송인호, 탈북 브로커 계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인권과정의, 2012. 2.

민법 제10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외에 북한이탈주민인 당사자의 궁박한 상태에 관한 입증도 필요할 것이므로,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이나 당시 고정적 수입의 유무 등 경제적 상황, 탈북민 단속의 현황, 중국 공안이나 북한 관계자들로부터의 위협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 탈북 용역 계약 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

### (1) 개요

2022년 9월 말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확정되어 공개된 판결문 중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 키워드 검색 결과, 탈북 용역 계약을 다루고 있는 사건은 약 14건으로 확인됩니다. 그 중 앞서 논의된 쟁점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4개의 판결은 제외하고,<sup>60)</sup> 나머지 10개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탈북 용역 계약 관련 판결의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역 제공자 등이 대여금·계약금·각서금의 청구를 구하고 있는 사건은 8건이 확인됩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원고로서 이미 지급한 탈북 용역 계약의 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사건이 2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대체로 기존의 판결례들과 유사하여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한 계약의 무효, 민법 제110조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문제되고, 일부 불법원인급여나 상계로 인한 감액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새로이 부각된 쟁점으로 탈북 용역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다룬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60) 2건의 판결은 원고 용역 제공자가 계약금 청구를 기각하여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심이 각하된 사건으로, 앞서 논의된 쟁점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2건은 1심 무변론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의 도과로 항소 각하된 사건, 대여금 청구하였으나 특별한 쟁점 없이 청구 인용된 사건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 계약의 명목과 실질에 관한 판단

탈북 용역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고용·위임·도급의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는 형식상 차용증이나 지급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 제공자가 탈북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주고,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면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으로 수료 시로부터 3일 내에 돈을 갚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법률행위의 성질은 명칭을 불문하고 각 계약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탈북 용역 계약에 근거한 청구는 ‘대여금’, ‘계약금’, ‘각서금’ 등의 사건명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법원은 모두 탈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증서상 채권자의 상속인이 차용증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던 사건이 있으나, 법원은 금전 거래의 경위와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의 지위를 고려하면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244325 판결 [대여금]

### 사실관계

소외 D는 2013. 11. 피고(북한이탈주민)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2014. 12. 29.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주요 판시사항

망 D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차용증 기재가 유일함  
 차용증에서 대여일과 변제기일이 동일하여 정상적인 금전대여라면 이와 같은 약정은 있을 수 없음,  
 실제로 D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건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도 없음, 피고는 2013. 11. 망 D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2. 4. 망 D로부터 15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음, 피고는 망 D에게 같은 해 12. 10. 112만 원을, 같은 달 16. 75,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만약 피고가 망 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전 거래가 매우 어색함, 피고는 2011년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이 명백한데, 망 D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선뜻 대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결국 망 D가 탈북브로커로서 탈북민인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모님을 데려오기로 하고 위 차용증을 작성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위 판결에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북한이탈주민은 2011.경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용역 제공자)과 사이에 피고의 북한 내 가족을 탈북 시키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탈북 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 북한이탈주민이 차용증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고 측은 차용증의 기재대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였지만,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인 4,000만 원의 대여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으로 탈북 의뢰 이후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용역 제공자 측에 지급하였던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을 지원하게 될 경우 변호사는 ① 대여금·각서금 등의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을 적극 주장하고, ② 의뢰인과 용역 제공자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을 탈북시키는 데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북 용역 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일부라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대응 전략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탈북 용역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남한 입국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하기 전에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용역 제공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 (3) 용역 대금의 가분성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을 의뢰하며 이미 용역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향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일부만 달성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일부 지급의무 내지 일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고(북한이탈주민)가 피고(용역 제공자)와 북한에 있는 원고의 딸을 탈북 시켜주기로 하는 탈북브로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딸을 국경을 넘게 해주는 대가(이른바 ‘국경비’)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딸을 국경을 넘게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sup>61)</sup> 법원은 “구두로 탈북브로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61) 춘천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937 판결

다툼이 없으나 위 600만 원이 원고의 딸을 해산까지 데려오는 데 그치는 비용이 아니라 국경을 넘게 해주는 대가라는 점은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러한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용역 제공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인당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1,300만 원은 도강비용 700만 원, 장백에서 연길까지의 비용 200만 원, 연길에서 대한민국까지의 비용 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강을 할 당시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일부 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도강비용 상당액과 일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sup>62)</sup> 법원은 ① 위와 같이 구간을 나누어 금액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② 탈북 용역 대금은 국경경비대원이나 중국 공안의 매수비용, 숙박과 이동에 든 경비, 피고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을 것인데 국경경비대원 등의 매수비용은 대략적 범위 내에서 유동적인 금액일 것이고 이동 과정 중 어느 장소에서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북 과정을 통틀어 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③ 결국 원고 측 가족이 무사히 강을 건너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도강할 때 피고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탈북 용역 계약의 특성 상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이 명시되거나 증빙서류에 남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탈북 과정의 개별 과업이나 절차 완수 내지 실패 여부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용역 대금이 과업 별로, 또는 단계 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 등을 사유로 한 용역 대금의 감액 가능성

탈북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탈북을 의뢰한 북한이탈주민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을 들여야 하는 용역 제공자로서는 아직 탈북 용역 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부 비용 지급을 요청하거나, 처음부터 일부 금액을 선지급 받아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 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

62) 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1490 판결

서는 이와 같은 비용의 청구가 갑작스럽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용역 제공자가 정보의 부족을 이용하여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용역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법원 판결에서도 발견됩니다. 법원은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피고(용역 제공자)가 지출할 비용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소액의 지출로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거나,<sup>63)</sup> 별다른 추가적 설명 없이 감액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sup>64)</sup>

비슷한 취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용역 대금과의 상계를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sup>65)</sup>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중국 공안에 붙잡힐 위험에 잠시 노출되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위험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통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는 결국 원고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 무사히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탈북알선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원고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지출한 경비(소지품 포함)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약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의 효력이 전체적으로 부정되지 않았고 남한 입국을 통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대금의 지급범위 제한이나 일부 감액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상담 과정에서는 감액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5) 탈북 용역 계약의 효력

###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한 계약의 무효

앞서 살펴본 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14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

63) 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1490 판결

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1450 판결

65) 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15576 판결

건의 원고인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용역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민법 제103조)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은, 해당 계약이 남한 주민인 피고(용역 제공자)가 관련 법절차를 무시한 채(여권이나 사증 발급 또는 입출국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등) 국경수비대원을 매수하는 등으로 북한 주민인 원고의 동생 가족의 중국과 태국으로의 밀입국을 도와주고, 그 성공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배척한 법원의 판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북한주민이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에 영구히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험한 탈북을 시도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을 지원하는 행위는 인도적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구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입출국에 관한 국제법질서와 대한민국의 남북한 주민의 상호 접촉과 방문에 관한 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인도적 차원의 구출·지원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이라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략) 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위험부담도 크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로 예상되는데,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만 수행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실비 변상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배척할 경우 위 약정상 채권의 추심을 둘러싼 범죄가 늘거나 혹은 구출행위 자체가 위축되어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민법 제104조에 의한 계약의 무효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10개 사례 중 8개 사례에서 민법 제104조를 토대로 계약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8652 판결과 같이 무효가 선언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하급심 판결례의 추이를 보았을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의 설시는 민법 제104조 주장을 배척한 대부분의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므로, 계약의 효력을 따질 때에는 아래 판시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주장·입증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지 탈북의 과정이 매우 급박하고 불안한 상황이

라는 점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민법 제104조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sup>66)</sup> 용역 대금으로 약속한 금액이 통상의 보수금과 유사한 수준인 경우도 무효 주장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1450 판결 [계약금]

원고는 피고의 대한민국 입국을 돕기 위해 숙식 등 체류비용, 교통편 마련 및 안내자 알선 등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금액이 통상 다른 탈북자들이 약정하는 보수금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지는 않은 사실, 피고도 어느 정도 관행화되어 있는 탈북 관련 보수금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의 공박, 경술,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928 판결 [계약금]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북한이탈주민)의 동생 가족 3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켰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약정금이 통상 다른 탈북자들이 약정하는 보수금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 또한 탈북자로서 관행화되어 있는 탈북브로커 보수비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이 사건 약정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공박, 경술,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23021 판결 [대여금]

피고가 탈북자로서 중국 공안 등의 단속을 피하느라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피고를 탈출시켜줄 현지인들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피고는 그의 인도에 따라 결국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② 원고가 피고의 탈출을 돕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약정금이 통상 다른 탈북자들이 약정하는 보수금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 또한 탈북자로서 관행화되어 있는 탈북브로커 보수비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와 동등한 지위의 협상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공박, 경술,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 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나52535 판결 [대여금]

당시 피고가 탈북 과정에서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 피고 스스로도 중국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66) 위에 적시한 판결 외에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나525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15576 판결도 비슷한 사유로 민법 제104조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와 그 아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까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대여금이 다른 탈북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라고 보이지도 않는바, 달리 이 사건 약정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8652 판결에서 계약이 무효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 판결에 특유한 사유로 “④ 김○○이 피고에게 탈북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거나 대한민국의 입국을 알선하는 데에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피고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대한민국 입국을 알선하여 준 박○○에게 알선료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6) 탈북 용역 대금의 소멸시효

탈북 용역 대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시기 나온 2가지 판결이 존재합니다. 탈북 용역 계약이 용역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민법 제163조<sup>67)</sup>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상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상법 제64조<sup>68)</sup>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은 인용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법원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69)</sup> 하지만 위 판결의 취지는 탈북 용역 계약이 도급으로서의 성격이 없다는 일률적인 판단이라 보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67)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68)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9)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나52542 판결

법원은 탈북 용역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나52542 판결 [대여금]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 원고는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대여를 18회 정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원고는 2011.경부터 C, D, E, F, G,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약정을 원인으로 이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 이 사건 약정에는 기일 내에 원금을 미지급할 경우 월 10%의 이자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민사거래에서의 약정이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이율인 점, 원고는 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사한 사안에서 대여금의 변제기한을 탈북자들의 '하나원 졸업 시'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지급받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정한 정착금을 사실상 담보로 하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위 법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금전 대여의 횟수와 빈도, 방식, 약정 이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통상적인 민사거래라기 보다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을 가지고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법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나52535 판결 [대여금]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유형 및 경위의 대여 약정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여 온 점, 이 사건 약정상의 이율 또한 통상적인 민사거래에서의 약정이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이율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탈북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를 하나원 수료 무렵으로 정하여 사실상 탈북자들이 하나원 수료시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착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 등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상행위이고,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가 늦어도 피고가 하나원을 수료한 지 3일이 경과한 날임이 분명한 2006. 10. 30.에는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5. 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 상대방 용역 제공자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례가 많고 약정 이율이 높아 영리성이 있을 것이므로, 금전 대여행위는 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위 두 판결은 모두 같은 법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서 다른 법원에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변제기가 5년이 도과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 판시내용을 주요한 참고자료로 하여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4 임대차관계

### 가. 임대주택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을 수료하고 지역 정착을 하는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주거지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초 거주지 전입 시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며, 거주지 전입 후 공공주택 신청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임대주택의 알선은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요청하여 주택 배정을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정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원 수료 시까지 미배정되는 경우, 원하는 지역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무연고청소년은 만 24세, 간호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는 1년까지 주택지원을 보류하게 됩니다.<sup>70)</sup>

### 나. 임대차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한 퇴거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이와 같이 배정받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주고 자신은 다른 집이나 지역에서 거주하기도 하는데, 통상 임대인의 허락 없는 전대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sup>71)</sup> 이

70) 이상 2개 문단은 통일부 정착지원과,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1. 9. 32면 참조.

71)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법 제20조 제2항).

때는 임대주택 관련법령이나 계약상 임차권의 양도, 변경, 전대 등이 가능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퇴거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과금 등을 수령하는 등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sup>72)</sup> 이에 수반하는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르는 법률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정착지원금의 관계

북한이탈주민이 수령한 정착지원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정착금이 아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가 금지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189434 판결).

#### 라. 임대주택 임차인 지위 승계

##### (1) 임차권 승계 요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그 동거인이나 친족 등에게 승계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경우 ① 임차권을 상속 또는 승계 받은 사람으로서, ②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고,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2. 5. 12. 시행 서울특별시규칙 제4487호, 제9조).

72)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인산지원 2016. 6. 22. 선고 2016가단56830 판결, 같은 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931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737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다53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적용되는 SH 임대주택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배우자 등 동거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여야 가능합니다.

(2)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가단22744 판결)

(가) 사실관계

북한이탈주민 A는 부인,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았고, A의 아들은 2014년부터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할머니가 임차한 SH공사 소유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하였고, A는 부인과 이혼한 후 아들이 사는 할머니의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A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 명의를 전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A는 2017년 SH공사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SH공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되므로,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아들이 임차인인 할머니가 사망할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망인의 직계비속(손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므로 구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9조가 정하는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SH공사의 주장에 관하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주택의 공급대상에 관한 규정은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받을 대상이 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후 그 공급받은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때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른 임차인 명의변경 요건을 모두 갖춘 아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A에 대하여 임대차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한 SH공사의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경제성과 함께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이 거절되면 A 등은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리라 예상되고, A가 부인과 이혼하여 각각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할 자격이 있어 각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북한이탈주민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SH공사가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 관련 실무사례

최근에도 SH공사가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동거하던 형 B를 대상으로 임차권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건물인도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망인과 형이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형제관계임을 입증할 수 없었고, 이에 해당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SH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고충민원을 제기, B의 임차권 승계를 요청하였습니다. SH공사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통일부에서 발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로 신청인이 상속권자라는 내용의 공증각서 등을 제출하면 승계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B가 상속권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였습니다. 먼저 지원 변호사는 통일부장관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하여 망인과의 형제관계를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B의 조카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있어 형인 B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된 경우였으나, B는 조카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정승인 신고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에 지원 변호사는 B가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들어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위 건물인도 청구 사건 법원에는 한정승인이 진행 중임을 사유로 기일 추정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B는 수급권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무지로 인해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원 변호사는 수급 신청을 통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 명의변경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은 2021. 12.경 한정승인을 수리하였으나, SH공사는 상속 한정승인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자 변경을 계속하여 미루다가, 약 3개월이 지나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B는 동생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sup>73)</sup>

## 5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건은 사안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들을 유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례들을 참고하여 유사 사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 국가의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보호 책무

북한이탈주민 A, 그의 처인 B, 이들의 자녀들인 C, D, E는 2006. 3. 탈북 후 한국 합동신문기관에 의하여 신문을 받을 당시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위 일가족 5명의 출생연도, 나이, 성(姓), 성별, 귀순 경위, 합동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였고,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귀순사실 및 신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적사항과 탈북경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한 점에 관하여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3164 판결).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09730 건물인도, 원고 소취하로 종결.

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항),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의 내용과 그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

법원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 납북된 경우, 해당 가족의 생사 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이 현재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기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6.25 전쟁 당시 납북된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던 중 국방부 등을 통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G 등의 존재 및 구조요청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의 한국 송환을 준비하였는데, G 등의 신병을 인계 받은 중국 내 한국 영사관 직원이 이들을 영사관이 아닌 근처 민박집에 투숙시켰고, 같은 날 중국 공안당국의 검문으로 G 등이 북한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법원은 외무공무원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적극적 조치의무를 인정하고, 재외국민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은 더욱 구체적인 의무로서 신속한 이행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영사관에 귀환을 요청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국가의 보호의무는 한층 더 시급하고 긴요한 것이었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가단5100517 판결).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위 사건과 유사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납북된 국군포로 E가 2004.경 북한에 생존해있다는 것을 확인한 남한 가족들이 국방부와 협력하여 E를 탈북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던 도중 E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는데,

국방부는 하루가 경과해서야 외교통상부에 협조요청공문을 보냈고, E의 가족들은 중국 소재 한국대사관에 구출을 요청하였으나 외교통상부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E가 북송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들이 국군포로의 신체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인 E의 가족들이 E의 재송환을 위해 노력해오다가 2012.경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528824 판결).

## (2)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한 사례

법원은 과거 공무원들이 1974.경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을 간첩이라 의심하여 3년 6개월 동안 중앙정보부 등에 구금하였던 사안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수용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 원고가 국가의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을 받아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국에서 장기간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오랜 기간 북한에서 생활하다 귀순하였고, 그 직후 3년 6개월가량 수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북한이탈주민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가합529715 판결).

# V



## 형사분쟁





# V

| Chapter |

## 형사분쟁

### 1 형사사건과 북한이탈주민

#### 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한계

많은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기본적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구금, 그리고 강제송환 등의 법집행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탈북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서는 기존에 행사하지 못했던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에 따르기만 하던 경험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누가 대신해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소식을 주고받거나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더 나아가 브로커 비용을 부담하며 가족들을 데려오는 상황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이처럼 북한에서 거주 할 때의 경험과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탈법, 위법, 불법적인 경험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형사소송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은 그가 북한의 어느 지역 출신인지, 북한에서의 성분(계급)과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남한에 직계가족이 함께 입국하여 지내는지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미리 예단하여 형사사건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농축되고 쌓여 있다가 표출되는 것이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자주 발생하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회원들께서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건을 착수했을 때 살펴야

할 것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나.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했던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구체적인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형사소송제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 북한이탈주민을 대할 때, 그 분들이 일반 남한주민과는 뭔가 결이 다른 행동과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소송수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법체계는 현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명령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그 아래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조선노동당 규약과 상급당 지시가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서 그 체계를 이루며 통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사회주의 법체계의 공통적인 특성에 더하여 북한 특유의 모습이 더하여져서, 북한의 헌법과 법률이 장식적인 의미에 그치고 북한 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내용은 개인에 대한 인권보장으로서 법질서보다 정권이 지향하는 집단이익, 보통은 적대계급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우리 형사소송 절차와의 차이점은 '예심'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예심기관이 피심자를 조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절차로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수사의 일종이며, 프랑스 예심제도의 경우 독립적인 예심판사가 존재하나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 예심단계에서의 장기간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sup>74)</sup>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58조에서 피소자와 피심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제62조에서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sup>75)</sup> 형사책임결정은 예심원이 피심자의 확정예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였을 경우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수사단계인 예심까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 보장도 이러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변호사는 각급

74) 송인호, 「통일법 강의」, 법률신문사, 2018, 138쪽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58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62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인선정시기)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변호사회의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8조), 보수도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같은 법 제26조) 실질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오히려 죄책을 강한 어조로 질책하며 시인하도록 종용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어용 나팔수’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수사와 재판절차가 엄밀한 증거에 의한 재판보다는 자백 위주의 수사로 진행되며, 구속과 체포가 법관에 의한 영장이 없이 검사의 승인으로 가능하여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수사단계와 예심 기간에서의 구금기간이 예심기간의 한도 2개월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하여(형사소송법 제187조) 재판을 받기 전부터 상당히 긴 기간 구류(구속)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겪었을 형사소송제도는 재판을 앞두고 한 번 체포되면 상당한 기간 인신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에 대한 신뢰를 경험해보지 못하여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고 변호사 선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2 북한이탈주민 관련 형사사건 현황과 특성

### 가.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건 현황

북한이탈주민이 당사자인 형사사건을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도서관의 판결서 방문열람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키워드로 하여 형사사건을 검색하여 확인된 전체 150여건 중 열람이 가능한 136건을 바탕으로 현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 건 명	건 수
강도치사	1
<b>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b>	<b>6</b>
<b>국가보안법위반</b>	<b>41</b>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
<b>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b>	<b>1</b>
<b>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b>	<b>50</b>
<b>명예훼손</b>	<b>4</b>
모해증거위조 등	1
배임	1
<b>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b>	<b>2</b>
<b>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b>	<b>4</b>
<b>사기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포함)</b>	<b>6</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상해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2
수뢰후부정처사	1
위조통화행사	2
<b>위증</b>	<b>3</b>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폭행	3
합 계	<b>134</b>

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건 현황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중 판결서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검색된 내용이어서,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형사문제를 모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위 내용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당하게 되는 형사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위 134건의 지역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법원 사건은 52건, 경기지역 법원 48건, 인천지역 법원 6건, 대전·충청지역 11건, 부산·울산지역 12건, 광주·전라지역 5건, 대구·경북지역 3건, 강원지역 3건, 제주지역 3건 등의 현황을 보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와 유사한 비율을 보입니다. 136건 중 21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유죄로 재판한 사건 중 9건은 선고유예가 있었습니다.

## 나.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형사사건 사례의 유형

법원도서관 판결서 열람을 통해 확인되는 주요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이 겪게 되는 형사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판결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례별로 아래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15노7511호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의 경우로 공소제기된 사례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로 부터 대가를 받고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을 탈북시키는 일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자, 과거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밀수를 위하여 수시로 두만강을 건넌던 경험을 살려 두만강을 통해 북한에 몰래 들어가 탈북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탈북시켜 주고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죄로 공소제기된 사례가 여러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2015노7511호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조항의 탈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할 의사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등)는 법리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두만강을 통하여 밀입북하여 탈북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대상자들을 탈북시켜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기 위해 밀입북함으로써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런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무죄로 판결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경우 벌칙 조항으로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변경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결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죄명으로 유죄로 확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 이외에도 여러 사건이 유사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죄명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여러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배임죄 : LH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채권 이중양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717호 사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는 거주지로 배정받은 LH 임대주택 등의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한 자산이자, 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정착 단계의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서의 소득활동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등급의 신용등급이 매겨져 신용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이나 적절한 금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경우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창업자금이나 브로커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탈법적인 방법(LH 공사나 SH공사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합니다)으로 임차권양도를 하여 돈을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사례가 많이 확인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717호 사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후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공판 외인 A에게 1차로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A 가족이 대신 입주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금융기관 B에서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다시 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B에서 LH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대출금 연체로 금융기관B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대출금 지급청구 및 아파트 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A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나 LH와의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못하여 A가족이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A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 이중으로 양도하면서 임무에 위배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A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주택법 제19조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 벌칙 조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 및 관련 규정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차계약내용을 살피고, 이 사건에서 임대사업자인 LH공사가 A와의 임차권 양도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주택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A에 대한 임차권양도에 따른 신임관계는 배임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사례

(가) 중국국적자이면서 허위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하여 정착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439호 사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이 적용되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고, 보호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하는데, 북한에 거주하였더라도 북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인(화교)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령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북한 구 국적법(1963. 10. 9. 공포)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

(1999년 개정 부분 / 2.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 절차로 공화국국적을 취득한 자)

제15조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청원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중국 국적법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면,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제9조 외국장기거주 중국국민이 자원 가입 혹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상실한다.

제13조 과거 중국국적이었던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국국적회복을 신청 할 수 있다. 중국 국적회복을 허가받으면 외국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중국국적의 취득, 상실과 회복은 제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신청수속을 해야한다.

제16조 중국국적의 가입, 퇴출과 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가 심사한다. 허가를 하면 공안부가 증서를 발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439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960. 3.경 중국에서 출생한 후 1975.경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1년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하여 이전의 중국 국적을 회복시킨 후 중국국적자로서 여권을 받아 2007. 12. 14.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중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8. 6. 30. 서울수서경찰서에 북한이탈주민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자수하여 정착지원금 등을 거짓의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재판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1년경 탈북한 후 중국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1976년경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2001년경 탈북후 중국 여권과 대한민국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으로 이주하기 전 작성된 중국 호구부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6. 5.경 요녕성 공안청에 호구부 회복을 신청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북한국적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국 출생 당시

어머니를 따라 중국국적과 아버지를 따라 북한 국적자 지위에서, 피고인이 1975년경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국적자임을 증명하는 공민증을 발급받으면서 중국 국적법 제9조에 따라 중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다고 보고, 이후 중국으로 탈북하였을 때 북한 국적법 제15조에 따른 북한국적 포기 절차없이 (국적회복신청이 아닌) 호구부 회복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피고인의 중국국적이 당연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 공안청에 정식으로 국적회복신청을 하더라도 중국국적 회복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중국국적 포기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76)</sup>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북한국적자로서 2001년경 북한을 이탈하고, 이후 중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타당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로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른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798호 사건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초기정착교육을 마치고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본 정착지원금으로 1인 세대 기준 800만 원과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의 정착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798호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2014. 6.경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같은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5. 6. 1.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에 각각 취업장려금 신청 당시까지 모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여 허위로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여 세 차례 합계 1,750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사례였습니다.

76) 기타 해당 사건 판결서에서는 중국 공안의 북한신분서류 확인 요청에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적절히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안의 일방적 추정으로 피고인을 중국국적자로 단정하여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피고인의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취소한 사실도 부적법하였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인 북한이탈주민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령한 지원금 전액이 국고에 환수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지원금 동액의 추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의 허위 수령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사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 275호 사건

남북한 간 교역을 함에 있어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2010. 3. 26. 천안함 사건 이후 5. 24 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전면 금지되어 실제 북한산 물품을 거래하거나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나 금수품으로 지정된 물품 등을 중국 등을 통해 우회하면서 ‘화물 세탁’을 거쳐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전략 물자와 사치품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 등 제3국으로 일단 유통시킨 후 중국 내 기항지에서 송장을 바꿔치기 한 뒤 중국과 북한 간 무역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중국과 왕래하면서 밀무역 등을 한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에 입국 후에도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75호 사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2016. 11. 중순경 중국 연길 거주 중국 화교출신 시누이를 통해 북한 라진에서 북한물품을 구매하여 인천거주 북한이탈주민 모 씨에게 국제 택배로 보내오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6. 11.말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에서 북한산 명태, 사탕, 과자, 국수 등 총액 8,550,000원 상당을 배편을 이용 인천 국제터미널을 통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 반입하였다고 공소제기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적용법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없는 반출반입을 처벌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한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은 북한 측 당사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목적으로 북한의 물품 등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이동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쳐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3국에 반출된 북한 물품 등을 제3국에서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1. 7. 12. 선고 2012도5171호 판결 등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의 중국 화교출신 시누이가 중국 무역업자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거쳐 구입한 물건을 다시 피고인이 반입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공소사실과 같이 북한의 물품 등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이동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쳐서 들여오는 경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 습니다.

#### (5)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동행사죄 무죄 사례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신변의 위험을 해소할 목적으로 현지 외국인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복송을 회피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의사 없이 위장혼인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정1146호), 국내 정착 과정에서 지인 소개로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의 체류자격을 위해 허위혼인신고하여 공소제기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075호),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임시 경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일용직 노동자인 중국 조선족과 얼마간의 금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는 형식으로 국적취득 및 장기체류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254호)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간략하게 기재된 판결서가 여럿이고, 그 이유가 기재된 판결서에는 보면 실제 동거한 사실, 생활비를 받은 사실, 동거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결혼이 성립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를 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재판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519호 사건에서는 상대

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허위로 혼인신고했다고 진술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인 여성이 중국인 등 남성과의 갈등과 문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허위혼인신고로 인지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621호

좋은 의도에서 단체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단법인이나 회사 운영에 관련된 법률적 지식 등이 부족하여, 준수해야 할 법규를 모르고 운영하다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문제되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621호 사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방과 후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후원약정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후원금을 받는 방법이나 각종 단체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여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례입니다.

기부금품법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에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여 제외가 된다는 게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입니다.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던 후원회 정관 제4조에서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그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원약정서에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함께 단체발전을 위한 기금에 후원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공소사실의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부한 사람들은 후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기부금품법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받은 기부금이 아닌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으로 재판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7) 사기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북한에서 빈곤한 삶이나 탈북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신체가 허약해지고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초 입국 후 5년 보호기간 동안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만,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의료급여 등 생활보호요건의 생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는 의료비용으로 부담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원지방법원 2012노1516호 사건에서는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6년경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2008. 1.경 대한민국에 입국후 하나원에서 여러 차례 경구약 처방을 받고, 의료급여 1종으로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고,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월 65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명의로 9개, 딸 명의로 5개 등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월 580,000원에 이른 사정, 일부 보험은 북한이탈주민의 기왕증을 속이는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공소외인의 권유로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원에서의 진료기록에는 구체적인 병명이나 질환의 정도에 관하여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보험회사 의뢰로 손해조사를 한 일부 손해사정법인은 ‘고지의무 위반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보고서도 있는 점, 보험상담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기초로 편취의사로 기왕증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재판되었습니다.

기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면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004), 폭행(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637)죄 판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8) 기타 선고유예 및 형면제 선고 사례

### ○ 폭행죄 / 선고유예 / 광주지법 2013노1193호 사건

항소심 판결서인 관계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폭행죄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월 54만 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허위 혼인신고) /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3672호

2010. 7.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중국거주 당시 4개월 가량 동거하였던 중국인 E씨가 국내입국 및 취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로 혼인신고한 내용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 탈북 당시 도움을 받은 중국인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어떠한 대가를 취득한 것도 없는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2,000,000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보험사기 방조 / 원심 판결 무죄 부분 파기, 형면제 / 부산지방법원 2014노692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노692호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적을 올려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다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받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과잉진료 및 입원을 받게 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기방조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은 유죄, 사기방조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달리 검찰에서의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로 재판하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고용근로자 사망사고) / 선고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611호 사건

피고인이 보일러대리점으로부터 보일러 연도 마감링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시공을 맡겼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공사대행을 맡겼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03.

6.경 입국한 이후 자동차정비일을 하다가, 2009년부터는 달비계공으로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처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시공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이중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사실상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정209호 사건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교통섬으로 연결되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4세 남자아이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종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이유로 벌금형 5,000,000원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3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

#### 가. 정착지원금 등 부정 수령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종종 아는 사장의 부탁으로 일하는 것으로만 올려놓고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에 들어주었는데, 그 회사에 고용된 북한이탈주민이 없다는 게 밝혀져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금전적인 유혹도 많이 받게 되어, 이러한 사례에서 약간의 대가를 받고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처럼 고용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제 고용지원

금은 고용주가 받게 되더라도, 고용주의 요청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거나 임금지급을 위장하는 급여통장을 만들어서 제공하여 고용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모든 정착지원의 혜택도 중단되게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 나. 통장 대여나 보이스피싱 사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흔히 유혹에 빠지는 범죄 중 하나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약간의 돈을 받고 범죄조직 일당에게 건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중고나라 사기(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 등에 사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에 필요한 소액의 돈 때문에 통장을 제공하고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 관련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 중 하나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은 정착 과정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사례도 많이 보게 됩니다. 회사명이나 사업주명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험처리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 후 구상을 받는 민사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는 물론 경제적인 사정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후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경우에 변호사님들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해결책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기 보다는 혹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강의를 할 때, 준법의식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여 북한이탈주민

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소개합니다.

## 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북한이탈주민일 때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 술을 먹고 회합을 가졌다가 폭행이나 상해죄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하던 비속어 등을 그대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글로 올려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종종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험을 하다보니,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쉬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너무 역센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가 커지거나, 북한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남한에서는 매우 험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sup>77)</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1심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를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된 일이 처벌되게 되면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이게 되므로, 사전에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피고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까지 염두에 두고 공연성의 성립 등 다른 구성요건을 검토하며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77)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용한 거센 표현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 마.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란 교제과정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 데 그 구체적인 행위로는 성폭행, 성희롱, 협박, 감금,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등으로 나타납니다.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보면, ‘아니! 이건 남녀간 문제인데’, ‘아니 이건 가정문제인데’하면서 공권력의 개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무엇보다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북한이탈주민인 가해자는 남북한 사이의 형사재판의 차이나 문화 차이 등을 적응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일을 공권력이 개입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데이트폭력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데이트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결혼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상대방을 함께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안방 문을 막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2시간 가량 감금하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휴대전화로 협박성 사진과 문자를 보내 결국 재판에서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공소사실 자체가 죄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여 그저 대화를 해보려는 의도였다고 강조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빛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했는데 북한이탈주민 남성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약한 점이 발견되곤 합니다.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모두 남한 사회에서 심각한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북한이탈주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당사자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을 낳고, 형사문제로도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바. 마약류 관련 범죄

북한에서는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약품이 부족한 관계로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밀수입된 대마초나 필로폰 등 마약류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빙두(필로폰)가 일종의 의약품처럼 사용되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마약류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에도 과거 친구들을 만나거나 중국에 방문했을 때 경솔히 마약류를 손대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집에 보관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요즘 부쩍 많이 관찰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는 점을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안내하고,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형사사건 지원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여러 각도에서 나타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원이 재판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특히 불신을 갖고,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인 북한이탈주민이 사건 결과에 그런 감정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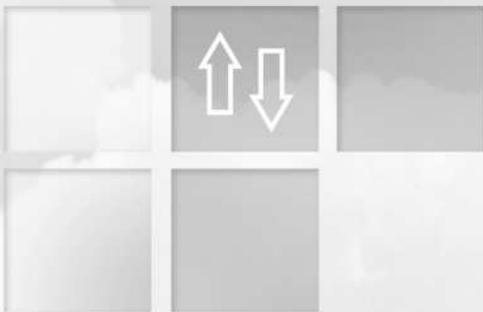
하면, 공익사건이든 사선으로 수임한 사건이든 우리가 보람을 느끼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이나 고소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 분들을 돕는 과정에서는 위의 매 뉴얼에 기재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절차 자체에서 공정한 처리, 대우를 받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회원 변호사님들께서 다른 일반국민인 의뢰인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한 뒤에는 북한이탈주민 의뢰인이 실제 설명 내용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가며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VI |

## 복지 제도 법률 지원





# VI

Chapter I

## 복지 제도 법률 지원

### 1 복지제도

#### 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복지 제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 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서는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책'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78)</sup>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보호기간(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 동안에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취업, 교육, 사회보장, 주거 등의 복지제도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1)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모두 정착기본금(1인 세대 기준 800만 원, 주거지원금 1,600만 원 포함 시 2,40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을 받습니다. 2022. 11. 기준으로 1) 직업훈련 장려금의 경우, 훈련에 참여한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경우 120만 원, 그 이후로부터 1,220시간까지 120시간 당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취득 장려금은 1회에 한하여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 취업장려금은 1년

78)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 (2022. 11. 29. 확인)

차는 수도권 500만 원/지방 600만 원, 2년 차는 수도권 600만 원/지방 700만 원, 3년 차는 수도권 700만 원/지방 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장애, 장기치료(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양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착가산금을 지급 받습니다. 앞의 사유 중 2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착가산금이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2) 생계 지원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동안에는 별도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18세에서 만 64세까지)은 최초 주거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 받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해 게시하는 자활사업안내(1)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1) 지침상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사정 등으로 조건 부과 또는 제시를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2. 북한이탈주민 기초수급 관련 문제 중 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 문제」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3) 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약제, 수술, 재활 등의 부분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급여청구분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외래 진료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PET 등 5%만 지급하면 됩니다.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 시 급여 항목별 30%~90%는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sup>79)</sup>

또한, 2022년 4월에 서울시에서는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00명에게 ‘건강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여 종합건강검진과 치료,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골격계 CT, 결핵 같은 맞춤형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북한어 표기 심리검사지를 활용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평가 진단하여 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sup>80)</sup>

#### (4) 주거 지원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 선호도를 반영하여 거주지역을 결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로 전입하기 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합니다. 또한,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1인 세대 기준으로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에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전국 약 244개 지자체에서 지정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주거 알선 및 임대주택 특약제도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등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기타 지원<sup>81)</sup>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하고,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일반대학,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학비 지원을 합니다. 또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79) 법무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472~473면

8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심리검사·치료까지 무료지원,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38581>

81) 법무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477~478면

제도 학비 지원을 합니다”와 같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영농창업에 희망하는 경우, 기초영농교육, 선도농가 영농실습, 영농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귀농을 지원하고, 기술벤처분야 및 창업 아이디어 보유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창업자에게 경영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합니다”와 같은 취업,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으로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맞춤형 사례관리와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리 전문 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를 남북하나재단과 25개 지역 하나센터에 배치하여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 (6) 신청 방법

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 제도는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 신청하면 됩니다.

### 나. 복지제도 일반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생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가구당 최저보장금액’만큼의 소득 금액이 없는 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이 때 노숙인 자활센터, 청소년쉼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sup>82)</sup>

생계급여는 ‘가구당 최저보장 금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고, ‘가구당 최저보장 금액’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데 2022년의 경우 1인가구 기준

82) 서울사회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쉬운복지법률시리즈(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2020, p.59

으로 583,444원입니다.<sup>83)</sup>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고, 예외적으로 식품권과 같은 물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지원결정 후 지체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긴급생계비는 1인 기준으로 1개월 간 441,900원이 지원되고,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고,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 주거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로 정해놓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자가거주자인 경우에는 노후한 주택을 개량해 주는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합니다.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임시로 거주할 곳이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1인 가구 기준으로 1개월에 387,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3) 의료지원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납하는 구조로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8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1. 8. 5.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가구는 1종 수급권자로서 입원진료는 무료이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복지재단의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로 매월 ‘건강생활 유지비’ 6,000원을 지급합니다”.<sup>84)</sup> 그리고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외래의 경우 모두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에서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원칙적으로 1회 지원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sup>85)</sup>

#### (4) 교육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의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에게는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등이 지원되며,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나, 학비는 학교로 송금됩니다”<sup>86)</sup>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에서는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되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84) 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쉬운복지법률시리즈(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2020, 67면

85) 법무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466~467면

86) 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쉬운복지법률시리즈(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2020, 65면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 (5) 기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실시하므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고, 이 역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제급여는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무부의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10~3월) 난방, 취사를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월 98,000원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되고 주급여가 계속 되더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sup>87)</sup>의 연료비 지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수급자 중 긴급지원 중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연체해 단전된 경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sup>88)</sup>라고 전기요금 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6) 신청 방법

위 복지 제도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 받을 통장, 도장 및 근로가 어려울 때에는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 분)을 지참해야 합니다.

87) 법무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470면

88) 법무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471면

## 2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수급 관련 문제

### 가. 급여 문제 일반

#### (1)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sup>89)</sup>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에 따르면 “‘보장비용 징수’란 부정 수급자로부터 이미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속이거나 감추어 급여를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신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업하는 경우, 업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2)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sup>90)</sup>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가족, 국가의 순으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우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나중에 부양의무자로부터 걷어갈 수 있습니다”라고도 안내합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9억 이상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소득, 재산을 고려하던 이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연락이 두절된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89)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쉬운복지법률시리즈(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2020, 72면

90)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쉬운복지법률시리즈(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2020, 74면

이 확인하는 경우,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현시점에서 연락 두절된 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을 지원 받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 (4) 세대분리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sup>91)</sup>로 보장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 별도로 급여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주소를 달리해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어 생계, 의료, 교육 급여의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하나, 주거급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에 따라 가구 구성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 등을 위해 주거 분리가 필요하거나 기타 가정 폭력 등으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가구로서 인정되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sup>92)</sup>

또한, 별거 중인 배우자와 사실이혼 상태라는 것을 보장기관(배우자 주거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별거 중인 배우자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5) 수급탈락 시 구제방안

수급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감추고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정 수급을 하는지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불합리한 수급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91) 민법 제77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92)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1면

(나) 이의신청

각 급여에 대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등 변동된 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 양식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 행정심판

처분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 행정소송

처분을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주거 지원 관련 문제

### (1) 북한이탈주민 임대차 특약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2)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변경 관련

다만,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도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 받고, 주거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된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주거가 확보된 남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 소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질병치료를 위하여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 소재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차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민사분쟁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관련 민사분쟁에 관하여는 제4장 민사분쟁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 문제<sup>93)</sup>

### (1) 제도 현황

탈북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만 18세 이상의 탈북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조건부과유예자’ 혹은 동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조건제시유예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보건복지부 자활관리 운영을 위한 안내 지침」 ‘자활사업안내(1)’에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학생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자활사업안내(1)’의 ‘조건제

93) 국회의원 지성호의원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2022, 101~107면

시유에 기준 중' 1) 북한이탈주민, 2) 취업준비생, 3)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정도이나, 이 중 1)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입 후 6개월간 조건 제시유예자로 관리'하는 조건이 있는데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탈북민 재학생이 남한에 전입 후 6개월 안에 수료할 수 없을 뿐더러, 2) 전입 후 6개월이 경과되어 '취업준비생'으로 조건제시유예자에 포함하려면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은 대안학교에서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전일제 수업에 참가하면서, 추가로 이 기준에 포함되기 위하여 영어학원 등에 등록하여 굳이 수강할 필요가 없는 토익 시험 수업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탈북민 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므로, 영어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탈북민 학생이 영어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학원 수업 수준에 따라가기 어렵고,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추가 공부가 필요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 및 대학 과정을 준비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불필요한 학원비를 지불하여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3)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은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위에 있음에도 '※ 교육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기준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 상기 기준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누적 2년 이내 조건제시유예 가능'의 기준에 맞추어 '조건제시유예'를 받게 되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결정이 상이합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 학생들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 (2) 개별 구제 방안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자활사업 참여 의무 때문에 기초생계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한 개별 사례 지원 요청이 있다면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관할 구청 등에 대상 학생이 '※ 상기 기준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누적 2년 이내 조건제시유예 가능'기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에는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가 1) 남북하나재단 ‘탈북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에 계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2) 서울시 대안학교이자 3) 서울시교육청 위탁학교 등으로 선정된 사항, 4)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 등을 통해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가 신뢰할만한 기관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5)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지자체 관할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위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제시유예자로서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 6) 학생 개인의 성실성과 미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개선 과제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각 대안학교가 ‘신뢰할만한 기관’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병역 문제’, 출국 후 재입국 시 ‘비자 발급’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 ▶ 보건복지부 자활관리 운영을 위한 안내 지침 ‘자활사업안내(1)’ 개정안 마련
- ▶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인증 제도 개선

## 라. 압류

### (1) 압류금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아동수당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등인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각 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이며, 수급자는 인출만 할 수 있습니다.



##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상황

신청인은 (압류 사유 등 기재)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생계유지에 곤란한 동계좌의 잔액을 일절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00은행))

## 3. 압류 범위 변경을 구하는 사정

### 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소액 예금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동법 제195조 제3호는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의 압류가 금지된다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이고 생계비의 경우에는 ‘185만 원’이며,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의 가액과 생계비를 더한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입니다(소갑 제3호증 수급자증명서 참조).

(신청인의 현재 상황 기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소갑 제4호증 잔액증명서 참조).

### 나. 취소를 구해야 할 신청인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 기재)

이에 따라 신청인의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법 집행의 적정화를 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합니다.

##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일부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정본
2. 소갑 제2호증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00은행)
3. 소갑 제3호증	수급자증명서
3. 소갑 제4호증	잔액증명서
4. 소갑 제5호증	소득확인증명서

20xx. 0. 0.

신청인(채무자)

000 (인)

### 00지방법원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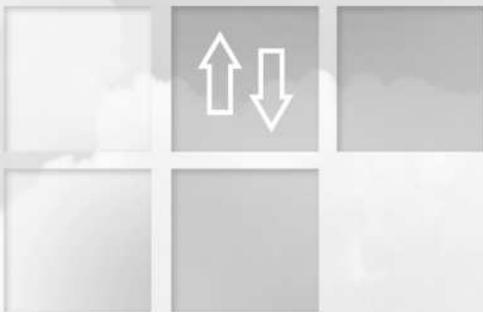
이 외에도 신청인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국세청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94) 은행명 및 대표이사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등기부등본상 본사무소 주소 및 대표이사를 기재하면 됩니다.

# VII |

## 교육지원 및 취업·창업 지원





# VII

Chapter I

## 교육지원 및 취업·창업 지원

### 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 가. 학력인정제도

##### (1) 법적 근거

학력인정이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학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는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주요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대상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교육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력인정기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졸업자격 인정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각 학교 급별 졸업자격 인정은 북한에서의 수학 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sup>95)</sup>

95)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백서」, 2015, 28쪽.

### (3) 인정 절차

학력인정 절차는 인정을 받으려는 교육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력인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대상자는 학력인정을 받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력인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 시행령 제98조의2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이북 지역 출신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학력인정을 위하여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학력확인서를 신청하여 수령한 후 발급받은 학력확인서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대학특례입학제도

### (1)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지원자격을 주는 특별전형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만이 대상이 되는 전형입니다. 전자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만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또는 제3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sup>96)</sup>

96) 남북하나재단, 『2023학년도 특별전형 입시핸드북』, 2022, 3쪽.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대부분 수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9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일반적인 수시모집과 달리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7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만큼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 (2) 북한이탈주민자녀(제3국 출생, 남한 출생) 특별전형

위 (1)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이하 “제3국 출생 학생”이라 합니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 할지라도 출생지(북한, 제3국, 한국)에 따라 대학입시 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제3국 출생 학생” 관련하여 각 대학에 정원 내 특례입학 허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입시 기준으로 “제3국 출생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별도의 특별전형은 없고, 대부분 “사회적 배려자 전형” 또는 “기회균등 전형”과 같은 전형의 지원자격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은 구분을 통하여 북한 출생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국 또는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3국 출생 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전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회적배려자 전형”이나 “기회균등 전형”을 찾고 각 전형별 지원자격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sup>97)</sup>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구분에 따른 대학입시 전형 구분〉<sup>98)</sup>

구분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한국 출생
	하나원 수수료 후 한국 국적 회복	제3국 국적 보유/ 한국 국적으로 변경/이중 국적 보유	한국 국적 보유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가능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제3국 출생으로 한정된 특별전형 (명지대, 서강대, 한경대 등)		지원가능	

97) 남북하나재단, 위 핸드북, 51쪽.

98) 남북하나재단, 위 핸드북, 50쪽 표 편집.

구분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한국 출생
	하나원 수료 후 한국 국적 회복	제3국 국적 보유/ 한국 국적으로 변경/이중 국적 보유	한국 국적 보유
북한이탈주민의자녀가 지원 가능한 특별전형 (강원대, 백석대, 성공회대, 한동대 등)	지원가능	지원가능	일부 지원가능
기타 특별전형/일반전형 (일반 학생들과 함께 경쟁)	지원가능	지원가능	지원가능
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제3국에서 12년 교육을 마친 학생의 경우 지원 가능	

## 다. 교육비 지원

### (1) 법적 근거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적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2)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5조〉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
  -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3) 주요 내용

#### 1) 중·고등학교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합니다(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 2) 대학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공립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등 전액을 면제하며(동조 제3항), 사립대의 경우 해당 학교가 위 항목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반액을 보조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5항).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동조 제4항), 사립대학의 경우 ①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②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자, ③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0점인 자, ④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정된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제한됩니다.<sup>99)</sup>

### (4) 지원 절차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신청서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동 시행규칙 동조 제3항), 교육지원 신청자가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조 제4항).

99) 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1, 106쪽.

## 라.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 (1) 법적 근거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 (2) 주요 내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청소년의 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안교육시설,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등 민간의 탈북청소년 교육 및 공동생활시설을 지원하고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시설이란 일반 학교에 편입학하기에 나이가 많거나, 학업 수준이 낮아 보충 학습이 필요한 경우의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의미하며, 방과후 공부방은 탈북청소년의 기초 학력 향상 및 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돕는 시설입니다.

### (3) 교육시설 목록<sup>100)</sup>

#### (가) 대안교육시설

시설명	연락처	소재지	기타
드림학교	041-563-1934	충남 천안	고등학교 학력인가 (중졸 검정고시)
여명학교	02-888-1673	서울 중구	중·고등학교 학력인가
하늘꿈중고등학교	031-758-2071	경기 성남	중·고등학교 학력인가
남북사랑학교	02-2688-0691	서울 구로	검정고시 등
다음학교	02-597-0204	서울 서초	검정고시 등

100) 통일부,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및 복지정보」, 2020, 12쪽.

시설명	연락처	소재지	기타
반석학교	02-3476-0283	서울 서초	검정고시 등
우리들학교	02-6015-6245	서울 관악	검정고시 등
장대현학교	051-974-0320	부산 강서	검정고시 등
한꿈학교	031-874-2156	경기 의정부	검정고시 등
해솔직업사관학교	033-263-2878	강원 춘천	직업교육, 검정고시

## (나) 방과후공부방

시설명	연락처	소재지
겨레열학교지역아동센터	02-2602-9560	서울 양천
금강지역아동센터	02-633-3675	서울 구로
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053-356-0463	대구 달서
삼성지역아동센터	02-865-5570	서울 노원
새꿈터지역아동센터	031-911-0611	경기 고양
새일아카데미	02-537-5545	서울 동작
성비전학교	031-655-8291	경기 평택
우리두리하나돌봄센터	031-981-1468	경기 김포
청주YMCA	043-235-6101	충북 청주
큰미래지역아동센터	02-6487-8292	서울 강서
하안누리지역아동센터	02-895-0720	경기 광명
한누리학교지역아동센터	02-2695-6507	서울 양천
한민족학교	02-2607-9560	서울 양천
한벗학교	031-968-7711	경기 고양

##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 가. 법적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통일부장

관은 동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합니다. 나아가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동법 제16조),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1조).

## 나. 주요 내용

### (1) 개요<sup>101)</sup>

제도(시행기관)		2014.11.28.까지 입국자	2014.11.29.부터 입국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하여 지원</li> <li>- (2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급</li> </ul> </li> </ul>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70개 고용노동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li> <li>•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지원</li> </ul>	
정착 장려금 (통일부)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 까지 취업장려금 지급(수도권 최대 1,800만 원, 지방 최대 2,100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총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해당 없음
	자격취득 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격취득장려금 지급	해당 없음
고용지원금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지급, 임금의 1/2을 기본3년(최대 4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li> <li>• 고용센터에 신청, 통일부(하나원)에서 지급</li> </ul>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li> </ul> </li> </ul>

101) 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1, 80쪽 표 편집

		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등 - (적립목적) 주택구입(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 까지 연장 가능)
--	--	---

## (2)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I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② II 유형은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II 유형에게는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나) 취업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은 전국 70개 고용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보호담당관의 주요 업무로는 ①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내담자 면담, ②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③ 취업장려금·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④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⑤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보호대장 관리, 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여, ⑦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⑧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과 협력관계 유지 등이 있습니다.

### (3) 통일부의 취업지원제도

#### (가) 고용지원금

##### 1) 개요

고용지원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을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 2) 지원 내용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취업보호대상자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월 15일 이상 근무), 계좌로 지급된 임금의 1/2 금액 중 월 50만 원 한도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적용제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가 농업 등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취업보호대상자가 ①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②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동조 2항),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sup>102)</sup>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

102)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별표2]  
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제35조의3제2항 관련)

항). 따라서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3항).

4) 신청방법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착장려금

1) 직업훈련장려금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는 거주보호기간(5년) 중에 수료시간 산정대상 훈련과정<sup>103)</sup>을 통하여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게는 직업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자격취득장려금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는 거주보호기간(5년) 중에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격취득 장려금(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게는 자격취득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지급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하 이 표에서 "부정행위"라 한다)으로 지급받은 금액	600만 원 미만	6개월	9개월
	6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	1년	1년 6개월
	1,2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년 6개월	2년 3개월
	3,000만 원 이상	2년	3년

103)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기관,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의미합니다(통일부, 위 실무편람, 93쪽.)

### 3)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을 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①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②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③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④ 육아 또는 질병(산업재해 포함)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보며, 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휴가(최대 90일까지)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 종사자,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종사자, ③ 신청자가 사업장 대표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 ④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⑤ 그밖에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급 배제대상으로서 지급이 배제됩니다.

## (4)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 (가) 개요

미래행복통장제도란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소득을 저축할 경우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상승과 장기근속근무를 통한 경제적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나) 지원 요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가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 이후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고, 중복 참여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 (다) 지원 내용

위 (나)요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는 최대 4년간(최초 약정 2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근로소득의 30%이내(10~50만 원) 중 본인이 계좌 개설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1:1로 매칭하여 적립됩니다.

#### (라) 만기수급 및 해지

계약을 준수하여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래행복통장에 적립된 전액(본인적립금+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사유<sup>104</sup>)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되며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 기타 비영리단체의 취업지원사업

#####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2007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nkjob.modoo.at> 전화번호: 02-883-7415

104) ① 약정기간 만료시(계약 만료일) 기초생계급여수급권자인 경우, ②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③ 지원금을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결혼비용,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④ 약정기간 내에 규정된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입 기간 동안 1회 이상), ⑤ 본인의 중도해지 요청, ⑥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통일부, 위 실 무편람, 99쪽.)

### 3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제도

#### 가. 법적 근거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6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① 창업 교육, ② 현장 실습, ③ 창업 상담, ④ 창업 자금 지원, ⑤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지원, ⑥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내용

##### (1) 남북하나재단의 창업지원제도

###### (가) 개요

남북하나재단은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 선정, 분야별 이론·실습교육,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 지원 내용<sup>105)</sup>

###### 1) 창업사업화 지원

남북하나재단은 창업 전 단계에서 기술벤처분야 및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비 및 마케팅·홍보비(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 기창업자 지원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개선자금(1회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5) 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1, 85쪽.

### 3) 창업연계형 지원

남북하나재단은 네일아트, 옷수선(리폼)등 생활밀착형 창업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대상자를 공모하여 창업교육, 현장실습 등을 진행한 후 우수 교육생(분야별 2~3명)에게 시설비 등 창업비용(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 기타 비영리단체의 창업지원사업

### (가)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아산상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이탈청년 및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국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매칭 그랜트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청년의 도전에 사회적 자본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asan-nanum.org>, 전화번호: 02-741-8220

### (나) 사단법인 더브릿지

사단법인 더브릿지는 개발도상국과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구마을의 잠재 가능성을 함께 높여가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사단법인 더브릿지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와 잠재력에 집중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창업을 통하여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thebridgeint.com>, 전화번호: 070-4365-8767

### (다) 열매나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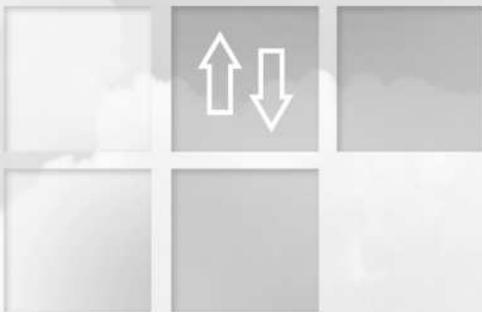
열매나눔재단은 사회구성원에게 지속적인 자립의 기회를 열어주는 자립지원 전문 NGO입니다. 열매나눔재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돕기 위하여 직접 5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였으며, 651개의 개인 창업가게와 327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merryyear.org>, 전화번호: 02-310-9508



# VIII |

## 법률구조 및 법원 소송구조





# VIII

Chapter

## 법률구조 및 법원 소송구조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는 사법부나 이외 기관 및 단체에서 경제적, 법률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법복지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법적 지원체계를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인 차별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법적 지원체계로는 법원의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선정제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정,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 선정제도가 있고,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및 그 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한 법률원조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제도의 안내 및 실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 1 법원의 소송구조

#### 가. 개괄

법원은 일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지위를 가지므로 법원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sup>106)</sup> 특히 2014. 9.부터는 소송구조 신청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106) 참고로 해당 법원의 구조예산과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에 따른 구조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도 소송구조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이하 ‘소송구조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sup>107)</sup>

소송구조에 관한 안내문과 소송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는 각급법원의 민원접수창구에 그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로 직접 검색하여 이를 전산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나. 구조의 요건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sup>108)</sup>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을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소송구조예규 제3조의2).

그리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

107)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26쪽.

108)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10., 222쪽.

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 다. 소송구조 대상 및 절차

### (1) 소송구조 대상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이 기본적인 소송구조의 대상이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도 모두 구조대상이 됩니다. 행정사건 및 가사사건은 각 본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소송구조의 대상이 됩니다.<sup>109)</sup>

### (2) 신청 절차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신청인은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인지대, 변호사비용, 기타,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와 구조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구조신청서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재산관계진술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sup>110)111)</sup> 또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장에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심사함에 충분할 정도의 사실관계를 기재하

109)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10., 229쪽.

110)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개정 2019. 10. 1. [재판예규 제1726호, 시행 2019. 10. 1.]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11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비보호대상자로 표시되어 있는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나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만료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예규 제3조의2 각호의 다른 구조요건을 갖춘 사실이나 자금능력부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여야 하며, 관련 증거방법 등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회분을 예납하여야 합니다.<sup>112)</sup>

### (3) 구조의 범위에 따른 비용 처리절차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 소장·상소장 등 지정된 서면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 변호사는 당해 심급이 종료된 이후에 일정한 금액(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증액가능)을 국가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소송구조예규 제11조 및 제11조의2). 송달료, 증인여비 등 기타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은 우선 국고대납절차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소송구조예규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그후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소송구조예규 제17조 제1항 제2호 참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참조).

### (4) 변호사비용 구조결정의 경우 변호사 선임 절차

신청자는 변호사 중 누구든지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할 지방변호사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사건 종결 후 의뢰인으로부터 약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송구조 안내문에서 ‘국고에서 지급할 금액인 100만 원’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보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도록 상한을 제한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sup>113)114)</sup>

112)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10., 237쪽.

113)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10., 246쪽.

114)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개정 2019. 10. 1. [재판예규 제1726호, 시행 2019. 10. 1.] 제11조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 (5) 사건 종결 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 관련

소송구조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당해 사건이 종결된 후, '사건번호', '내용', '예금주(본인 명의)·은행명·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를 기재한 '보수지급신청서'에 '소송구조 결정문 사본', '소송위임장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예규 제12조 등 참조).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명의 은행으로 지급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요하지 않습니다.

## 2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국선변호인제도는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sup>115)</sup> 법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① 법 제129조제2항,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 원으로 한다.

제11조의2 (재량에 의한 조정)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소송구조결정의 취소나 사임의 사유, 소송기록의 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위 기본보수액의 1배 범위에서 증액 또는 기본보수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15)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26쪽.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 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sup>116)117)</sup>

국선변호인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안의 난이, 직무의 내용,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선정등에관한규칙 제10조 참조).

### 3 헌법소원심판의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 가. 개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청구의 경우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정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sup>118)</sup>

116)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 (2022. 11. 24. 확인) 참조.

117)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되나, 비보호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파산결정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을 통해 그 밖의 다른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118)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시행 2019. 6. 19.]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2019. 6.

## 나.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 및 절차 등

헌법소원을 신청한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있고,<sup>119)</sup> 8) 위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국선대리인 선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에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위 규칙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sup>120)</sup>

### 19., 일부개정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2. 8. 29., 2006. 5. 29., 2011. 11. 10., 2012. 7. 4., 2019. 6. 19.>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2006. 5. 2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119) 만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규칙 제4조의 각호의 다른 선임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그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20) 헌법재판소는 1)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 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다. 국선대리인의 보수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하고, 사건의 난이도,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횟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 등에 지출할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9조). 보수지급은 국선대리인 모집 시 미리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수령한 후 국선대리사건이 종료되면 별도의 보수지급청구 절차 없이 바로 지급됩니다.

## 4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 가. 개괄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2017. 10. 31. 신설되었으며, 2018. 1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sup>121)</sup>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 선정에 의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sup>122)</sup>

#### 121)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나.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및 절차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sup>123)</sup>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으로 요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위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8조 제1항의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sup>124)</sup>

## 다. 국선대리인 보수

국선대리인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의5). 사건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은 사건명(사건번호), 심판청구인, 국선대리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활동내역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23) 만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다른 선임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그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2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으로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행정심판위원회는 1)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1) ~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을 기재한 보수지급청구서를 해당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 가. 개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위 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 참조). 「법률구조법」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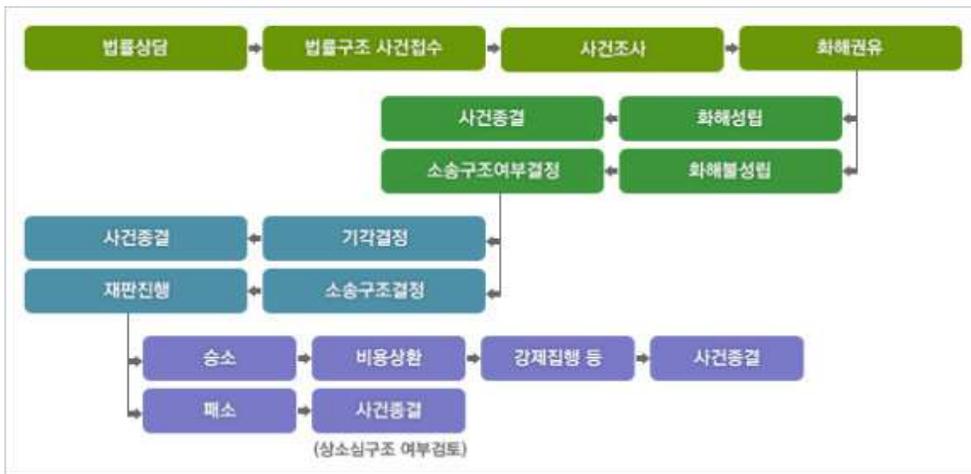
### 나. 법률구조 신청 등 절차<sup>125)</sup>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125)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struct/summary.do> (2022. 11. 24. 확인)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struct/summaryCriminal.do> (2022. 11. 24. 확인) 참조.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민사 등과 형사사건인 경우에 처리절차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처리절차〉<sup>126)</sup>



〈형사사건 처리절차〉<sup>127)</sup>



126)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struct/summary.do> (2022. 11. 24. 확인) 그림 편집.

127)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struct/summaryCriminal.do> (2022. 11. 24. 확인) 그림 편집.

## 6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구조

### 가. 개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국제법상 난민,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하여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가 포함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나. 법률구조 신청절차<sup>128)</sup>

신청자는 법률구조신청서, 재산관계진술서, 사건관련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위 사실증명원(관할세무서에서 발급),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준비하여 위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법률구조재단 주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법률구조를 결정합니다. 서류 접수 후 법률구조 여부 결정 통보까지 대략 30일에서 45일 정도가 소요되나, 이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단축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신청자는 재단이 선임한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28)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biz/biz01.php> (2022. 11. 24. 확인) 참조.

〈법률구조 절차〉<sup>129)</sup>



다. 소송비용의 처리절차<sup>130)</sup>

법률구조재단은 신청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우선하여 대체 지급하고, 사건종료 후 신청자로부터 상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승소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 패소한 사건, 형사 사건(합의된 사건을 제외), 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사건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종류에 따른 소송비용액 보수표〉<sup>131)</sup>

사건종류	보수
일반 본안사건(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1,000,000원 또는 700,000원 이내
성폭력피해자사건(민사, 형사, 가사, 헌법소원 등)	1,000,000원 이내(소송비용 포함)
한부모가정사건(자녀양육비, 인지청구, 양육비이행확보)	700,000원 이내(소송비용 포함)
민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 파산등) 또는 공시송달사건	500,000원 이내
민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구조결정한 본안 사건에 부대하는 경우)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소가 2천만 원 이하), 형사사건	500,000원 이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 문서작성	300,000원 이내
조사보고서 작성	150,000원 이내

129)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biz/biz01.php> (2022. 11. 24. 확인) 그림 편집.

130)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biz/biz01.php> (2022. 11. 24. 확인) 참조.

13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biz/biz01.php> (2022. 11. 24. 확인) 표 편집.

법률구조재단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구조하고 있으므로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는 진행하던 사건이 종료되면 법률구조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추가진행 여부는 다시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법률구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구조재단은 법률구조 종료보고서를 확인하여 결정된 내용에 따라 비용상환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수행변호사는 소송비용상환면제결정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자의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이 완료 또는 면제되면 법률구조가 종결됩니다.

## 7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원조사업을 통한 법률구조

### 가. 개괄<sup>132)</sup>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또는 회원 변호사가 맡고 있는 개별 사건 중 서울법원관할 사건에 한하여 법률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 변호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원조를 진행합니다.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를 통한 법률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원조사업회규칙」 및 「법률원조사업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나. 법률원조의 요건

법률원조의 대상자는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자, 회원이 법률원조를 추천한 사건, 기타 법률원조사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지원합니다(법률원조사업회운영규정 제2조 및 제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진술서,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기타 증거서류 등 법률원조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회공헌팀으로

132) 이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법률원조안내)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EgovPageLink.do?link=/site/online/OnlineLawAssistance> (2022. 11. 24. 확인) 참조.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률원조사업회운영규정 제4조). 제한된 예산 안에서 법률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법률원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조비용의 회수가 필요하므로, 승소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 다. 법률원조의 절차 및 변호사 보수 등

회원 변호사로부터 법률원조신청이 들어오면,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원조가 결정되면, 위원회는 수행변호사를 위촉하고 수행변호사는 피원조자와 소송위임장 및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률원조사업회규칙 제7조). 수행변호사는 소송에 착수하고, 작성한 소장 및 답변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청구서를 제출합니다(법률원조사업회운영규정 제7조). 착수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000원이 지급되나, 소송의 난이도와 소송물가액을 참작하여 1,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sup>133)134)</sup> 수행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기타 감정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법률원조사업회규칙 제11조 제1항). 수행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 사업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건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법률원조사업회운영규정 제8조).

133) 법률원조사업회규칙 제11조(실비 등의 지급)

① 사업회는 법률원조사건에 소요되는 실비를 소송비용 청구에 의거 수시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법률원조사업회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착수금을 지급한다.

② 사업회에서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범위는 법률원조사업회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한다.

134) 법률원조사업회 운영규정 제6조(착수금)

①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심급별로 사건유형 및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을 참작하여 사업회가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체 지급한다.

③ 보수가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회의 결의를 얻어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추가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안으로 상임이사회의결의를 거쳐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회의 결의를 얻어 제1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원조 절차〉<sup>135)</sup>



소송이 종료되면 수행변호사는 소송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판결문 혹은 결정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 피원조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회는 기지급한 변호사비용 등 구조비용을 피원조자로부터 환수합니다. 수행변호사는 법률원조의 조건으로 피원조자에게 승소 후 집행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받으므로, 피원조자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소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결된 때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원조자인 피고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법률원조사업회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

수행변호사는 소송비용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빈곤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률원조사업회규칙 제10조). 관련서식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02-6200-6286, social@seoulbar.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35)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www.seoulbar.or.kr/EgovPageLink.do?link=/site/online/OnlineLawAssistance> (2022. 11. 24. 확인) 그림 편집.

## 8 그 밖의 법률구조 활동

### 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과 지역별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단을 조직 및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 및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개별 권리구제를 넘어 북한이탈주민 인권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구조소위원회에서 직접 사건을 맡아 수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인권팀 02-2087-2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법무부의 법률상담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관계, 재산관계 및 권익보호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온라인 또는 전화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을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부서(02-2110-3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연계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방문, 온라인 또는 전화)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법률상담 이후 소송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거주지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콜센터(국번없이 1577-6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인** 회장 김 정 옥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 비매품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